

목 차

I. 목적	1
II. 법적근거	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3
2. 자연재해대책법령	9
3. 재해구호법령	14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
III. 법령 세부해설	41
1. 적용 재난의 범위	43
2. 용어의 정의	43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재원별 부담률)	47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55
5.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56
6.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	59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63
8. 자연재난 피해신고	64
9. 재난지원금 지원 등	65
10.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65
11. 그 밖의 재난복구	67
12. 간접지원	68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	68
14.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등	68

IV.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69
1.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71
2. 국고추가지원율	73
3.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74
V.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77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79
2.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86
① 이재민 구호	89
② 사유시설	94
③ 공공시설	117
3.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130
VI.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33
1. 이재민 구호	136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37
3. 공공시설	156
VII.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17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179
2. 중앙합동조사단 업무요령	208
3.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214
4. 재해대장 작성요령	231

I. 목적

II. 법적근거

I 목 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연재난 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대책 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II 법적근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 정의 관련>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상황 보고 관련>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하되,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고지원 관련>

제66조 (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6.8]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3의 2.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지정사항의 심의
4.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의 사후승인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그 소속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상황 보고 관련>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5.31>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6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분명히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 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1.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비율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

⑥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 자연재해대책법령

2-1.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 정의 관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해복구계획수립 관련>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역본부장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재해대장 기록 관련>

제46조의2(재해대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중앙합동조사 관련>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2]

<복구비 선지급 관련>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2.22>

제71조 (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앙합동조사단 구성·운영 관련>

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④ 제73조에 따라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복구비의 선지급 절차 등 관련>

제38조 (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3 재해구호법

<재난지원금 사전지급 관련>

3-1.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3-2.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6.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

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填)한다. <신설 2013.6.17>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6. 6. 21 제정
대통령령제15032호
1998. 9. 26 개정
대통령령제15900호
1999. 8. 19 개정
대통령령제16537호
2000. 7. 1 개정
대통령령제16880호
2001. 2. 3 개정
대통령령제17125호
2001. 4. 18 개정
대통령령제17197호
2003. 7. 30 개정
대통령령제18076호
2004. 7. 24 개정
대통령령제18480호
2005. 11. 30 개정
대통령령제19144호
2007. 9. 14 개정
대통령령제20265호
2008. 12. 31 개정
대통령령제21214호
2010. 03. 26 개정
대통령령제22090호
2012. 4. 10 개정
대통령령제23713호
2012. 5. 23 개정
대통령령제23807호
2013. 7. 30 개정
대통령령제2467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 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어업경영·산림경영·가축사육·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주택 복구
 -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사. 공공시설의 복구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 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 42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 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부담 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 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 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3. 경제적 과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 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 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② 중앙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접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읍·면·동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실종·부상 구호 구호금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자·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 지원			
1) 응급 구호	구호물품 지원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2) 장기 구호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이 전파(全破)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60일, 반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침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7일간 구호를 한다.
3) 생계 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 위 표 나목3)·4)의 생계 지원과 학자금 면제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하여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林家)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가. 주택 복구			
1) 주택 파손·유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0퍼센트 나) 용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주택 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반파 주택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移築)·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전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과 주택의 용자비율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주택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로 한다.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주택 침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3) 세입자 보조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4)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p>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p> <p>1) 농경지 유실·매물</p>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6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재단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물 되거나 유류(油類)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鹽害)를 입었을 때에는 1피해지구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물은 평균 심도(深度)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p>2) 농경지 매입</p>	매입가격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p>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p> <p>1) 농림시설 파손·유실</p>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p>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p> <p>가) 대파(代播) 대금</p>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1) 지원 50퍼센트 (2) 용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 농경지의 유실·매물·침수 또는 가뭄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물·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를 지원한다.
<p>나) 농약 대금</p>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수·관수(冠水)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落果) 또는 가뭄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초지 유실·매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잠실(蠶室)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4) 가축 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 유실·폐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어망·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4) 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바.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稚魚)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成魚)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관리 광역상수도시설, 국가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	복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가)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에 드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나) 자체 설계 및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2) 지방공공시설 [지방도, 군도(郡道), 농어촌도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공립 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독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 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등]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 시설			
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광역시·구역안 도로·시도	복구에 드는 금액	지방비 100퍼센트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나) 한국농어촌 공사 수리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70퍼센트 (2) 지방비 30퍼센트	
다) 사유림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라) 수산시설(수 산물 유통· 제조 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용자 50퍼센트	
마) 사립학교	복구에 드는 금액	(1) 지방비 50퍼센트 (2) 자기 부담 50퍼 센트	

비고

1.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2.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4.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물대책	수원(水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 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 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는 제 외한다.
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제1항)	손실보상 결정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처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별표 2]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 (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2.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1) + ③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비고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1. 재해예방 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 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2.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보통세
3.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란 하천 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제9조제1항 관련)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1	49,500 이상	50,000,000	2	49,001 ~ 49,500	49,500,000
3	48,501 ~ 49,000	49,000,000	4	48,001 ~ 48,500	48,500,000
5	47,501 ~ 48,000	48,000,000	6	47,001 ~ 47,500	47,500,000
7	46,501 ~ 47,000	47,000,000	8	46,001 ~ 46,500	46,500,000
9	45,501 ~ 46,000	46,000,000	10	45,001 ~ 45,500	45,500,000
11	44,501 ~ 45,000	45,000,000	12	44,001 ~ 44,500	44,500,000
13	43,501 ~ 44,000	44,000,000	14	43,001 ~ 43,500	43,500,000
15	42,501 ~ 43,000	43,000,000	16	41,201 ~ 42,500	42,500,000
17	41,501 ~ 42,000	42,000,000	18	41,000 ~ 41,500	41,500,000
19	40,501 ~ 41,000	41,000,000	20	40,001 ~ 40,500	40,500,000
21	39,501 ~ 40,000	40,000,000	22	39,001 ~ 39,500	39,500,000
23	38,501 ~ 39,000	39,000,000	24	38,001 ~ 38,500	38,500,000
25	37,501 ~ 38,000	38,000,000	26	37,001 ~ 37,500	37,500,000
27	36,501 ~ 37,000	37,000,000	28	36,010 ~ 36,500	36,500,000
29	35,501 ~ 36,000	36,000,000	30	35,001 ~ 35,500	35,500,000
31	34,501 ~ 35,000	35,000,000	32	34,001 ~ 34,500	34,500,000
33	33,501 ~ 34,000	34,000,000	34	33,001 ~ 33,500	33,500,000
35	32,501 ~ 33,000	33,000,000	36	32,001 ~ 32,500	32,500,000
37	31,501 ~ 32,000	32,000,000	38	31,001 ~ 31,500	31,500,000
39	30,501 ~ 31,000	31,000,000	40	30,001 ~ 30,500	30,500,000
41	29,501 ~ 30,000	30,000,000	42	29,001 ~ 29,500	29,500,000
43	28,501 ~ 29,000	29,000,000	44	28,001 ~ 28,500	28,500,000
45	27,501 ~ 28,000	28,000,000	46	27,001 ~ 27,500	27,500,000
47	26,501 ~ 27,000	27,000,000	48	26,001 ~ 26,500	26,500,000
49	25,501 ~ 26,000	26,000,000	50	25,001 ~ 25,500	25,500,000
51	24,501 ~ 25,000	25,000,000	52	24,001 ~ 24,500	24,500,000

53	23,501 ~ 24,000	24,000,000	54	23,001 ~ 23,500	23,500,000
55	22,501 ~ 23,000	23,000,000	56	22,001 ~ 22,500	22,500,000
57	21,501 ~ 22,000	22,000,000	58	21,001 ~ 21,500	21,500,000
59	20,501 ~ 21,000	21,000,000	60	20,001 ~ 20,500	20,500,000
61	19,501 ~ 20,000	20,000,000	62	19,001 ~ 19,500	19,500,000
63	18,501 ~ 19,000	19,000,000	64	18,001 ~ 18,500	18,500,000
65	17,501 ~ 18,000	18,000,000	66	17,001 ~ 17,500	17,500,000
67	16,501 ~ 17,000	17,000,000	68	16,001 ~ 16,500	16,500,000
69	15,501 ~ 16,000	16,000,000	70	15,001 ~ 15,500	15,500,000
71	14,501 ~ 15,000	15,000,000	72	14,001 ~ 14,500	14,500,000
73	13,501 ~ 14,000	14,000,000	74	13,001 ~ 13,500	13,500,000
75	12,501 ~ 13,000	13,000,000	76	12,001 ~ 12,500	12,500,000
77	11,501 ~ 12,000	12,000,000	78	11,001 ~ 11,500	11,500,000
79	10,501 ~ 11,000	11,000,000	80	10,001 ~ 10,500	10,500,000
81	9,501 ~ 10,000	10,000,000	82	9,001 ~ 9,500	9,500,000
83	8,501 ~ 9,000	9,000,000	84	8,001 ~ 8,500	8,500,000
85	7,501 ~ 8,000	8,000,000	86	7,001 ~ 7,500	7,500,000
87	6,501 ~ 7,000	7,000,000	88	6,001 ~ 6,500	6,500,000
89	5,501 ~ 6,000	6,000,000	90	5,001 ~ 5,500	5,500,000
91	4,501 ~ 5,000	5,000,000	92	4,001 ~ 4,500	4,500,000
93	3,501 ~ 4,000	4,000,000	94	3,001 ~ 3,500	3,500,000
95	2,501 ~ 3,000	3,000,000	96	2,001 ~ 2,500	2,500,000
97	1,501 ~ 2,000	2,000,000	98	1,001 ~ 1,500	1,500,000
99	501 ~ 1,000	1,000,000	100	300 ~ 500	500,000

비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하고,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지수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용자금용 추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앞쪽)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용자신청 여부	[]	[]	[]	[]	[]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허가·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확정	⑥	⑦	⑧	⑨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용자신청 여부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관할 세무서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통장, 이웃]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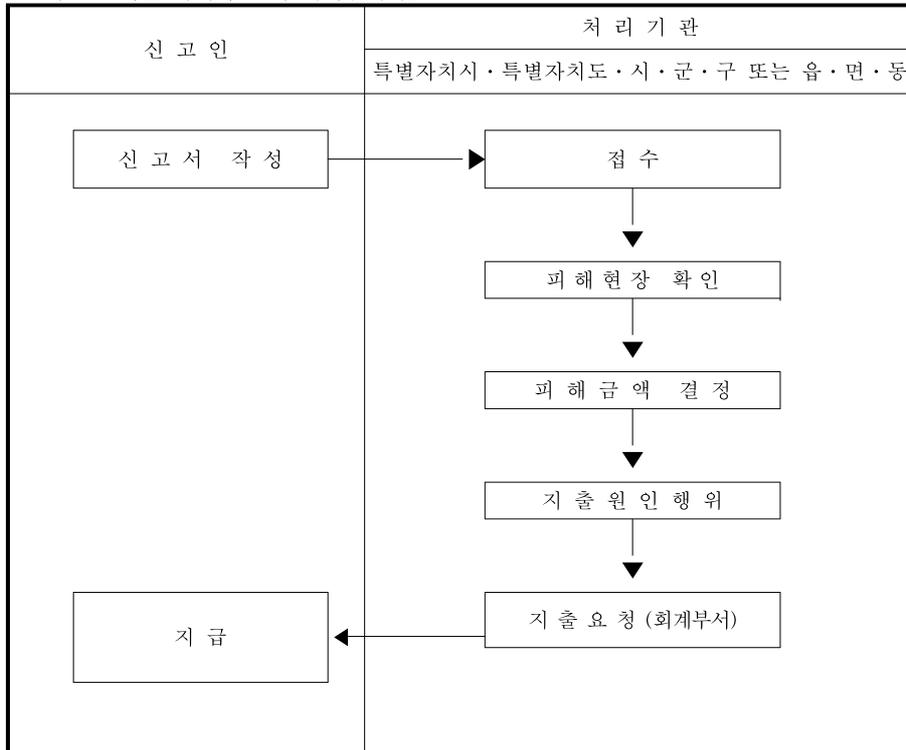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 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앞쪽)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어업권자 (행사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어업권 현황	면허(신고·허가)번호 제 호			면허(신고·허가)기간			
	면허(신고·허가)면적 (ha, m ²)			어장 위치			
구분	품종별	크기(cm·g)	수량(kg)	마리 수	입식 장소	입식 일자	
입식	계						
	그 밖의 사항			전화번호			
	품종별	입식 년도	크기 (cm)	수량(kg)	마리 수	판매단가 (원/마리)	금액 (천원)
출하(판매) 또는 폐사등	계						
	그 밖의 사항			판매일시 판매처			연락처
	구입(확보)일자	구입(확보)처	전화번호	사료명	수량	구입단가	
사료구입 (확보)							
<p>「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 어장 안의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매매전표 및 중요구입(생산) 관련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96. 6. 24 제정
내무부령제683호
2004. 7. 26 개정
행정자치부령제24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제2조 (부담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등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며, “평균재정력지수”라 함은 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재정력지수를 말한다.

제3조 (시·도의 추가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시설중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가 그 부담분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6>
② 지방비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법령 해설



III 법령해설

1 적용 범위(기준령 제2조)

-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조수(潮水) 기상특보(주의보·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자체 복구계획수립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 1차적으로 피해조사권자가 확인해야 함

2 용어의 정의(기준령 제3조)

- ①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 주생계수단 확인은 당해 1가구 총 수입액중 농·어가 수입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한다.(임업은 농가 기준, 염생산은 어가 기준 적용)
 - 확인 절차 :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이장확인, 탐문조사 등을 통한 확인결과, 농·어가가 확실한 경우 주
생계수단 확인 절차 이행 불필요

※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의 근로
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농어업소득 제외)임

※ 1가구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라 함은

1. 주민등록은 동일 세대이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2.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농·
영어하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자급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영농·영어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
하는 세대로 볼 수 없음

* 자급·부업기준 : 농·어업(현금, 외상 등)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3. 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2012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조건표(통계청)>

(단위 : 명, 천원)

세대원수	2명이하	3명	4명	5명	6명이상	비고
농가, 임가	22,574	33,272	41,485	48,033	50,053	
어가, 엽가	25,150	35,919	38,450	43,644	44,981	

※ '12년 농어가 가계지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필히 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확인(서식)>

(단위 : 원)

연번	지급내역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 조건표		근로·사업 소득 내역	
	수급자 (주민번호)	피해종류	재난지원금 지급액	세대원 수	가계지출 기준금액	근로·사업소득 금액	근무처

- ②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포함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 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④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 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⑤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⑥ “기능복원사업”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⑦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⑧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 ⑨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⑩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기타 용어의 설명

- 생계지원 구분 적용할 시설별 면적 등의 기준
 - 농경지 : 피해자의 농경지 전체 경작면적을 기준(피해면적 또는 실경작 면적이 아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 동 시설설치 전체면적을 기준
 - 축사, 초지, 잠실, 버섯재배사 : 허가면적 또는 동시설 전체 설치 면적 기준(피해면적이 아님)
 - 어선 : 피해 어선의 신톤수 기준(구톤수가 아님)
 - 어망·어구 :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
 - 수산물증·양식시설 : 피해자가 당해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총면적·수량 기준(피해면적 또는 시설설치 면적에 관계없음)
- 1개소당 피해 : 피해부위가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성을 갖는 피해 지구를 말함
- 외국인 :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실제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도 포함)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기준령 제4조)

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면적임
- 영농·영림·영어·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 ※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에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②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의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복구
-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①항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어가·임가·염가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

③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기본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 그 밖에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소 방 방재청	1.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금	○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	지원100			
	2. 이재민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	-	-	-
	3. 이재민 장기구호	○ 주택이 전파·유실된자는 60일간 구호 ○ 주택이 반파된자는 30일간 구호 ○ 주택이 침수된자는 7일간 구호 ※ 최초 7일간 구호는 사도의 재해구호금으로 지원	지원100			
	4. 세입자 보조	○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지원100			
	5. 공공시설	○ 공공건물 -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 소하천 ○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 수위·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100	50	50	50
	6. 응급복구	○ 차재대 및 장비비	50	50		
	7.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농 립 축 산 식품부	1.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100			
	2.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지원60	30	10	
	3.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벼섯재배사 등	지원35	55	10	
	4.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5.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6. 초지 유실·매몰	"		70	30	
	7. 잠실 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8.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50	30	20	
	9.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지원50	30	20	
	10. 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11. 간접지원	○ 영농·양축·영어·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지원			
	12.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농림축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100 50 50 70	50 50 30		
해 양 수산부	1. 염전 복구	○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60	30	10	
	2. 어선	○ 40톤 미만 ○ 40톤 이상	지원35	55 70	10 30	
	3. 어망·어구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지원35	55 70	10 30	
	4. 수산물 증·양식시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5. 수산생물 입식	○ 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50	30	2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해 양 수산부	6. 공공시설	○ 어항시설 - 국가어항 - 지방,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어항	100 50 50	50 50		
		○ 어선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어업 무선국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양식장·양어장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50		50	
		○ 수위우량관측소시설 등 해양수산부관리 공공시설 등	100			
		○ 등대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일반해수욕장	50	50		
		○ 항만시설 ○ 지정항만(국가관리) ○ 지방항만(지방관리)	100 50	50		
		교육부	1.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지원100	
2. 공공시설	○ 국립학교시설 ○ 공립학교시설 ○ 사립학교시설 ○ 기타 공공시설		100 50 50 50	50 5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안 전 행정부	1. 공공시설	○ 지방도, 군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 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 농어촌도로 ○ 자전거도로	50 50 50	50 100 50		
	2. 간접지원	○ 각종 지방세 감면	별	도	지	원
문 화 체 육 관광부	1. 공공시설	○ 일반 체육시설, 관광안내표지관 ○ 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 ○ 국민관광지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	50 100 50	50 50		
문 화 재 청	1. 공공시설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위탁)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100 70 50	30 50		
환경부	1. 공공시설	○ 공원시설 - 국립공원 - 시·도립공원	100 50	50		
		○ 상하수도시설	50	50		
		○ 폐수·폐기물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100			
국 토 교통부	1. 사유시설	○ 주택복구	지원30	60	10	
	2. 침수주택수리비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지원100			
	3. 공공시설	○ 도로시설 -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	100			
○ 하천시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10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국 토 교통부	3. 공공시설	○ 철도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마을기반조성	50	50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100			
		○ 항공시설	100			
		○ 도시개발시설	50	50		
		○ 국토교통부 공공시설 등	100			
국방부	1. 공공시설	○ 군사시설	100			
산림청	1.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사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3. 산림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50		30	20
		○ 농약대 지원	지원100			
	4. 간접지원	○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5. 공공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시설 - 국유림 - 지자체 소유림 및 사유림	100 50	50		
		○ 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목원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기타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경찰청	1. 공공시설	○ 경찰시설	100			
보 건 복지부	1. 공공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미 래 창 조 과학부	1. 공공시설	○ 정보통신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 ① 고속국도, 통신, 전력 등 국영기업체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②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과 사설 방조제·보·양수장 등 사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③ 농림·수산시설, 과수목 철거비는 지원복구 대상시설에 한하되 철거비 지원 여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국고지원기준
0.1미만	18억 이상
0.1이상 ~ 0.2 미만	24억 이상
0.2이상 ~ 0.4 미만	30억 이상
0.4이상 ~ 0.6 미만	36억 이상
0.6이상	42억 이상

-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 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50%로 한다.
 - 또한 기준령 제5조 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5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기준령 제6조)

- ①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 공작물 기타 시설물 :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 ③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 공공사업 지구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 ④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 농작물보험 : 경작불능보험금, 재정식, 재파종보험금, 나무보상보험금

- 보험가입 어선
- ⑥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
[소방방재청 지침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 ⑦ 하천구역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소하천법」,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대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 ⑧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
- ※ 지원금액(원) = 재난지수 x 1,000원

6 국고추가지원기준(기준령 제7조)

- 기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노력지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함
-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 국고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0.9 +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0.1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가.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비교.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

- 시·군의 경우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의 경우 :
$$\frac{\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

나.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기본법 제67조제2항의 다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예방사업 =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

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결과, 「자연재해 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 가감을 반영대상 및 기준

반영대상	가·감을 반영기준
재난관리체계등의 평가결과 및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 최우수등급 +5%p · 우수등급 +3%p · 장려등급 +1%p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최근 2회 진단 등급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시·군·구 -5%p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 미작성 시군구 -3%p
재해복구사업 점검 결과	· 미흡 시군구 -1%p

<국고추가지원을 산정방법>

□ 국고추가지원율은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α)을 부여할 수 있음

-국고추가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9 +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1 + α

□ 국고추가지원율 계산표

①재정력 지수에 의한 기준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기준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9	재해예방노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1
0.1미만	80%	72.0%	0.1미만	50%	5.0%
0.1이상~0.2미만	77%	69.3%	0.1이상~0.2미만	53%	5.3%
0.2이상~0.3미만	74%	66.6%	0.2이상~0.3미만	56%	5.6%
0.3이상~0.4미만	71%	63.9%	0.3이상~0.4미만	59%	5.9%
0.4이상~0.5미만	68%	61.2%	0.4이상~0.5미만	62%	6.2%
0.5이상~0.6미만	65%	58.5%	0.5이상~0.6미만	65%	6.5%
0.6이상~0.7미만	62%	55.8%	0.6이상~0.7미만	68%	6.8%
0.7이상~0.8미만	59%	53.1%	0.7이상~0.8미만	71%	7.1%
0.8이상~0.9미만	56%	50.4%	0.8이상~0.9미만	74%	7.4%
0.9이상~1.0미만	53%	47.7%	0.9이상~1.0미만	77%	7.7%
1.0이상미만	50%	45.0%	1.0이상	80%	8.0%

· 재정력 지수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재해예방노력 지수 =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계산 예시(화천군 호우피해)

○ 조 건

- 피해액 900억원, 복구액 1,848억원(국고 1,435, 지방비 380, 자체 33)
-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 0.126
 -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24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60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 69.3%+7.1%+1%(① + ② + ③) = 77.4%
 - ① 재정력 지수에 대한 기준 : 77%(계산표 참조) x 0.9 = 69.3%
 -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대한 기준 : 71%(0.7~0.8의 경우) x 0.1 = 7.1%
 - ③ 가감율(±α)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장려 + 1%

○ 국고 추가 지원액(C)

C = (지방비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①+②+③)

C = (380억원 - 60억원) × 77.4% ≒ 248억원

⇒ 조정 복구액 : 1,848억원(총액 변동없음), 국고 1,683(248 증), 지방비 132(248 감), 자체복구 33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령 제8조)

-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기준령을 준용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지역재난안전대책의 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국고는 지방비로 함
 - ※ 용자금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방금융기관과 협의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 시·도 50% 시·군·구 50%
 - " 0.3~0.9미만 " 40% " 60%
 - " 0.9이상 " 30% " 70%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5조에서 정한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8 자연재난 피해신고(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 읍·면·동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식량과 출하량·판매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신고내용을 접수·비치하여 재난발생시 미신고자 및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9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함
 - ※ 기정예산,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 활용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30% 유보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100% 유보
 - ※ 재난지원금 입금시 계좌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입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보관
 - ※ 신용불량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는 가족 등 지급선을 사전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10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준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함

< 개선복구 대상 >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4.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개선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지구단위 종합복구 대상 >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로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도로·교량, 하천 등에 대한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7. 해안가 어항시설, 방파제, 방조제 등의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8. 도시계획 구역내 하천, 유수지,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하수관거 등의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9.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우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단가는
 -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둘째, 지원기준지수 및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기준지수 적용
 - 셋째,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부설시공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보유, 설계 및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위 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5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비 계상
- ※ 용역비 적용요율 : 별첨 참조(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계상
- 수산증양시설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11 그 밖의 재난복구(기준령 제11조)

- 기준령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관의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2 간접지원(기준령 제12조)

- 기준령에서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간접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함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기준령 제13조)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외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14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등(기준령 제14조)

- 기타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함

IV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국고지원 기준 및 추가지원을

IV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1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시도별	해당 시군구
0.1이상~ 0.2미만	피해액 24억원 이상	부산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강원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2이상~ 0.4미만	피해액 30억원 이상	부산	중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인천	남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동구, 남구, 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	익산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경북	경주시, 영주시, 고령군, 칠곡군, 울진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시도별	해당 시군구
0.4이상~ 0.6미만	피해액 36억원 이상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광주	서구, 광산구
		대전	중구, 서구, 대덕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세종	세종시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군
		강원	원주시
		충북	청원군, 음성군
		충남	당진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전남	목포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남	양산시
		제주	제주
0.6이상 시군구	피해액 42억원 이상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강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2 국고추가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지원율
[서울시]		금정구	69.2%	대덕구	66.5%	여주군	64.1%	천안시	58.4%	곡성군	77.0%	봉화군	77.3%
종로구	55.7%	강서구	61.1%	[울산시]		연천군	75.2%	공주시	72.5%	구례군	76.4%	울진군	73.1%
중구	50.3%	연제구	69.2%	중구	72.2%	가평군	69.2%	보령시	72.5%	고흥군	76.1%	울릉군	77.0%
용산구	58.4%	수영구	71.9%	남구	63.8%	양평군	69.2%	아산시	58.4%	보성군	76.1%	[경상남도]	
성동구	61.1%	사상구	66.5%	동구	66.8%	[강원도]		서산시	69.5%	화성군	74.9%	창원시	58.4%
광진구	63.8%	기장군	64.1%	북구	66.5%	춘천시	69.5%	논산시	75.5%	장흥군	76.1%	진주시	69.2%
동대문구	63.8%	[대구시]		울주군	58.4%	원주시	66.5%	계룡시	72.2%	강진군	74.9%	통영시	70.2%
중랑구	66.5%	중구	69.2%	[세종시]		강동시	72.2%	금산군	74.9%	해남군	76.1%	사천시	72.5%
성북구	63.8%	동구	74.6%	세종시	67.1%	동해시	72.2%	부여군	73.4%	영암군	72.2%	김해시	61.4%
강북구	66.8%	서구	71.9%	[경기도]		태백시	72.2%	서천군	74.9%	무안군	73.4%	밀양시	72.5%
도봉구	66.8%	남구	74.6%	수원시	50.0%	속초시	72.2%	청양군	77.3%	함평군	75.8%	거제시	61.1%
노원구	66.8%	북구	68.9%	성남시	50.0%	삼척시	76.1%	홍성군	72.5%	영광군	72.8%	양산시	63.8%
은평구	67.4%	수성구	66.5%	의정부시	61.1%	홍천군	75.2%	예산군	72.8%	장성군	75.5%	의령군	75.5%
서대문구	64.7%	달서구	66.5%	안양시	55.4%	평창군	80.5%	태안군	75.2%	완도군	76.7%	함안군	69.8%
마포구	61.1%	달성군	66.8%	부천시	58.1%	영월군	77.4%	당진군	66.5%	진도군	76.7%	창녕군	73.1%
양천구	61.1%	[인천시]		광명시	58.4%	평창군	77.1%	[전라북도]		신안군	75.5%	고성군	72.8%
강서구	63.8%	중구	66.5%	평택시	58.4%	정신군	72.8%	전주시	63.5%	[경상북도]		남해군	75.8%
구로구	63.8%	동구	74.6%	동두천시	66.8%	철원군	76.1%	군산시	66.5%	포항시	63.8%	하동군	77.3%
금천구	64.1%	남구	69.2%	안산시	58.4%	화천군	76.4%	익산시	69.5%	경주시	69.5%	산청군	76.1%
영등포구	55.7%	연수구	66.5%	고양시	50.0%	양구군	77.0%	정읍시	75.2%	김천시	76.1%	함양군	75.6%
동작구	61.4%	남동구	66.5%	과천시	50.3%	인제군	76.1%	남원시	75.5%	안동시	74.9%	거창군	75.5%
관악구	64.1%	부평구	69.2%	구리시	61.1%	고성군	72.8%	김제시	80.8%	구미시	63.8%	합천군	77.3%
서초구	50.3%	계양구	74.9%	남양주시	58.4%	양양군	75.8%	완주군	72.8%	영주시	72.8%	[제주도]	
강남구	53.0%	서구	66.5%	오산시	58.4%	[충청북도]		진안군	77.3%	영천시	75.5%	제주도	65.7%
송파구	53.0%	강화군	72.8%	시흥시	55.7%	청주시	61.1%	무주군	77.0%	상주시	75.2%	이하여백	
강동구	61.4%	웅진군	72.2%	군포시	58.4%	충주시	72.2%	장수군	77.3%	문경시	75.2%		
[부산시]		[광주시]		의왕시	61.1%	제천시	72.2%	임실군	77.3%	경산시	66.8%		
중구	71.9%	동구	71.6%	하남시	58.4%	청원군	69.8%	순창군	77.3%	군위군	76.1%		
서구	74.9%	서구	64.4%	용인시	50.3%	보은군	76.1%	고창군	77.3%	의성군	77.3%		
동구	71.9%	남구	71.9%	파주시	58.4%	옥천군	75.8%	부안군	76.4%	청송군	75.8%		
영도구	74.6%	북구	69.2%	이천시	61.1%	영동군	77.0%	[전라남도]		영양군	77.3%		
부산진구	66.5%	광산구	66.2%	안성시	61.1%	증평군	72.2%	목포시	66.5%	영덕군	76.7%		
동래구	69.2%	[대전시]		김포시	56.0%	진천군	74.5%	여수시	69.2%	청도군	76.4%		
남구	69.2%	동구	70.1%	화성시	50.3%	괴산군	77.0%	순천시	72.2%	고령군	73.1%		
북구	72.2%	중구	66.5%	광주시	55.7%	음성군	66.8%	나주시	74.9%	성주군	75.5%		
해운대구	61.1%	서구	63.5%	양주시	61.1%	단양군	76.1%	광양시	67.8%	철곡군	72.2%		
사하구	66.5%	유성구	58.4%	포천시	66.5%	[충청남도]		담양군	75.8%	예산군	76.1%		

3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4. 10. 소방방재청 훈령 제2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을 산정방법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가감률 반영대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재난복구 비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이하 “가감률”이라 한다)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구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구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침수흔적도 및 재해복구사업 점검 결과

제4조(가감률 반영기준)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 지원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시·군·구 : 5퍼센트 가산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시·군·구 : 3퍼센트 가산
3. 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결과 장려등급에 해당하는 시·군·구 : 1퍼센트 가산
4.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최근 2회 진단 등급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시·군·구 : 5퍼센트 차감
5. 제3조제3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침수흔적도 미작성 시·군·구 : 3퍼센트 차감
6. 제3조제3호에 따른 복구사업 점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시·군·구 : 1퍼센트 차감

제5조(가감률의 확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평가·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복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구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점검·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가감률을 확정하고 「기준령」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국고추가지원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반영방법) 가감률은 국고추가지원율을 산정하는 전년도의 평가·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1회에 한정하여 반영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4.10)

이 훈령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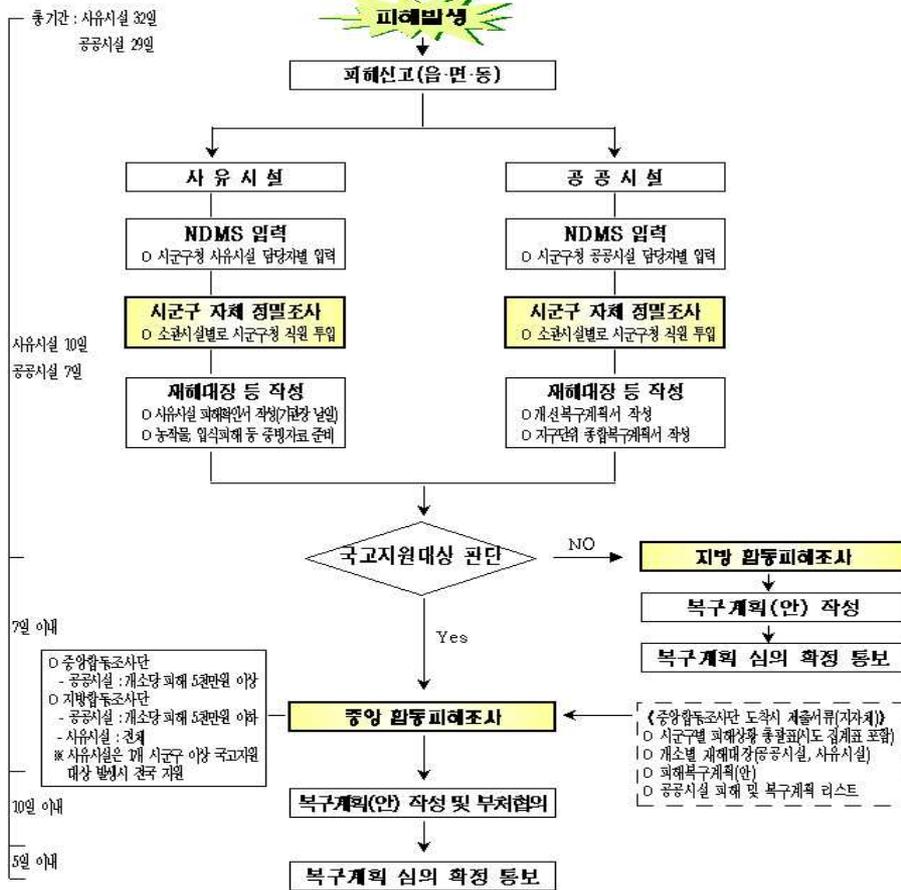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V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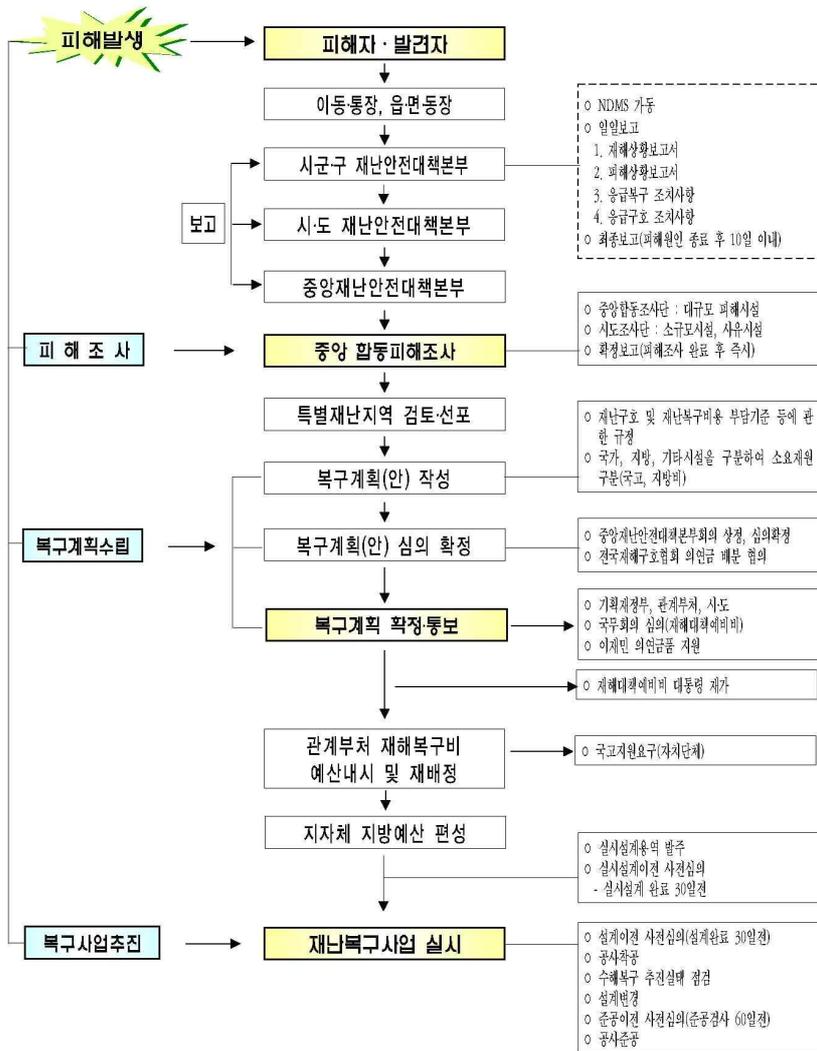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① 절차 및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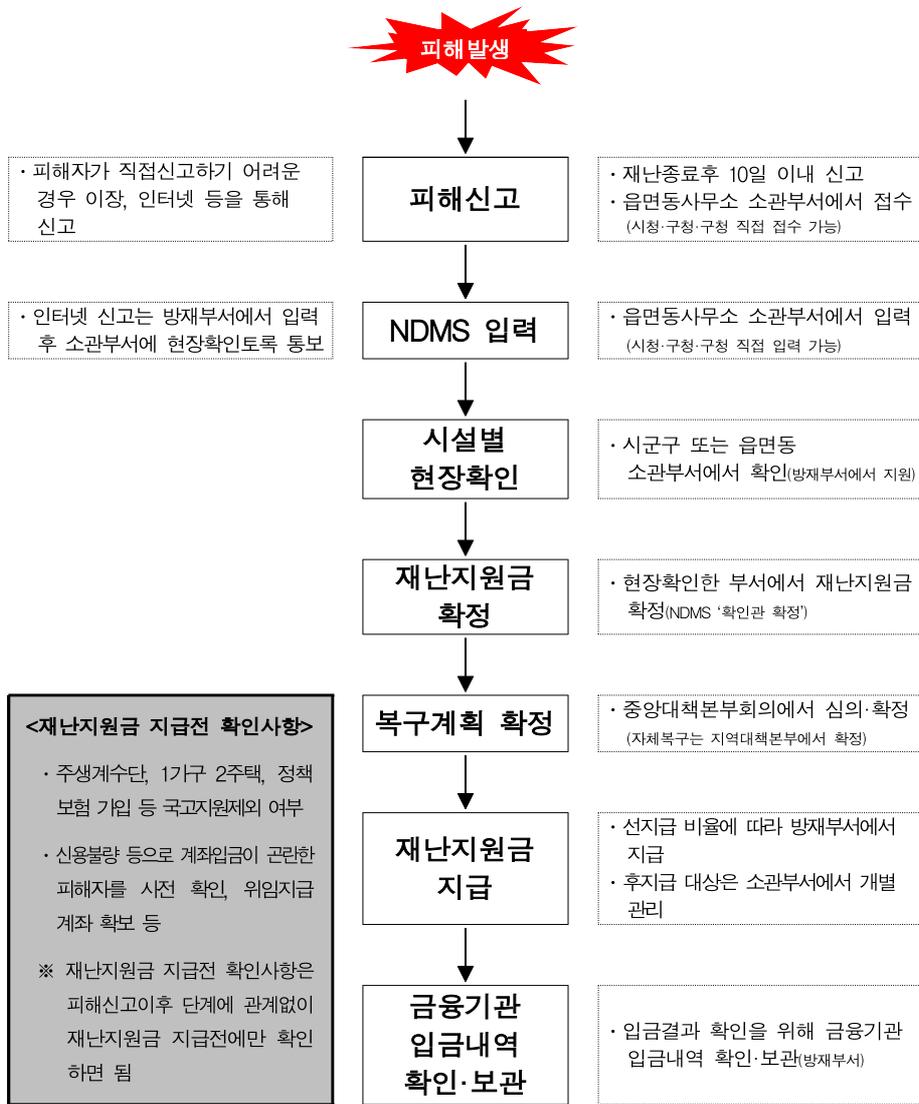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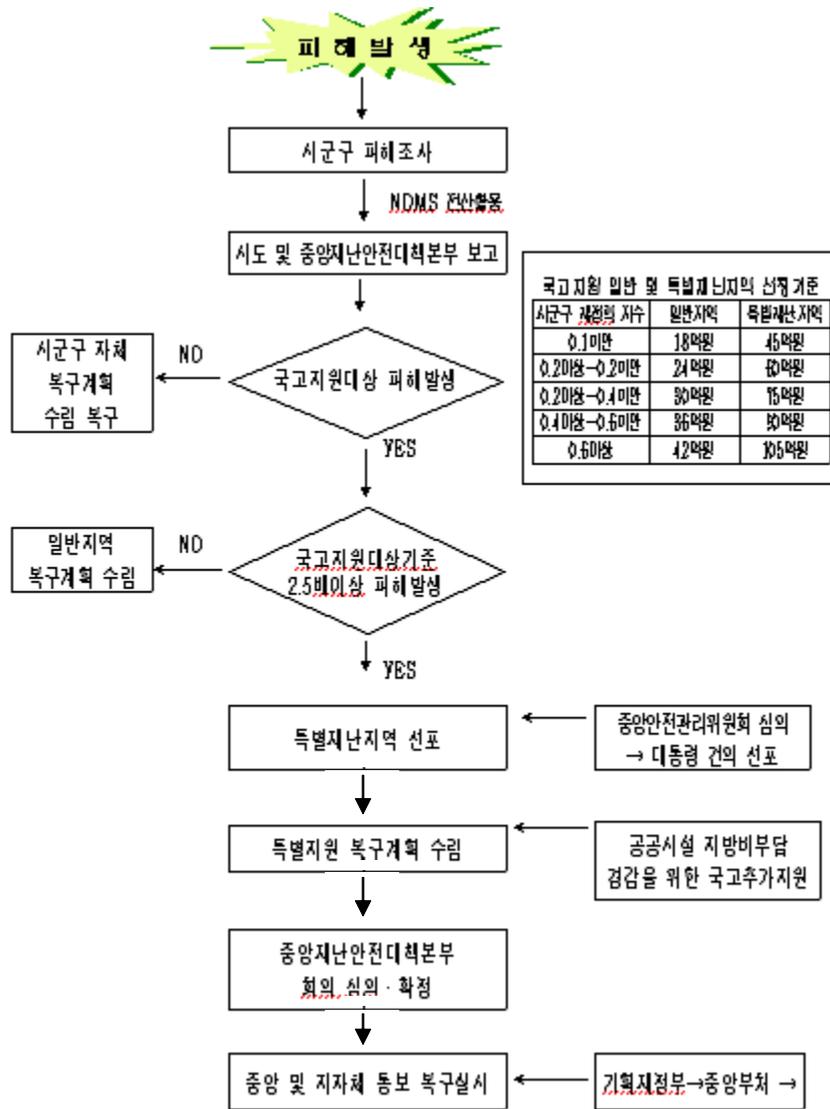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② 피해조사 보고권자

-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되
- 원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피해보고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이 소재한 시·도에서 피해보고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락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하여야 함.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 다만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사 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함(기본법 제20조 제3항).
- 인명 및 선박·어망피해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시는 피해발생 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 조치하여야 함.
 - ※ 인명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발생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보고 및 지원함.

③ 보고시기 및 방법

-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 원인이 종료된 후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4일 이내에 보고하되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함
- 피해확정보고 :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풍수해 상황 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증감내역을 작성·보고함

※ 유의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피해최종보고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누락·과장 등의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였다가 추후 피해 확정보고시 반영토록 하기 바람.
(피해최종보고는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 효율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가 신고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합동조사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 사유시설 피해조사시 누락·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 리·통장 임회조사 실시
- 공공시설 중 도로·하천·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군·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 피해보고방법 : 피해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하되, 피해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관리 피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용 서면 보고함

④ 복구계획 수립권자

-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대상 : 양봉시설, 응급·장기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시설물 소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다만, 인명 및 선박·어망은 피해자 주소지와 선적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 시설물이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자가 피해보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 단위(최소행정단위)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피해금액이 시군구별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 이전 최종 피해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중앙합동조사 이후 시군구별 피해금액이 선포 기준 초과시 추가 선포

2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훈령)

제정 2011. 6. 29 소방방재청훈령 제244호
개정 2012. 6. 29 소방방재청훈령 제282호
개정 2013. 7. 18 소방방재청훈령 제23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시·군·구에 대하여는 중앙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의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피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시설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군·구청의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외 시설은 소관시설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대장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고 및 조정) ① 피해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 및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생계수단 확인 요령) ① 규정 제3조제1호의 주생계수단 확인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하되 임가는 농가에 염생산가는 어가에 각각 준하여 적용한다.
② 세대당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소득 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사업소득이 「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 미만인 세대를 규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의 주생계수단인 세대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1. 6.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이재민 구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 입력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 조사 ○ 소방방재청 인명피해 관리지침 참조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p>(예)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부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 외국인도 복구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불법체류자 확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사망·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수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 세대주 : 1인당 10,000 - 세대원 : " 5,000 ※ 세대주, 세대원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주란 성별, 연령, 주민등록상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등록부의 직계존속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 공무원, 군인 등은 업무와 관련 공상인 경우 개별법에 따라 처리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p> <p>·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p>	<p>·사업상의 목적, 취업, 교육,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한 자라 할지라도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 볼 수 없음</p> <p>○ 부담률 : 지원 100%</p> <p>○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p> <p>○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유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장례비 지급 : 500</p> <p>※ 유족은 재적부나 가족등록부를 확인한후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p>
	<p>○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이상 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이상이 예상될시 피해대상에 포함</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신체장해등급 7급></p> <p>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p> <p>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p> <p>- 세대주 5,000</p> <p>- 세대원 2,500</p> <p>○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 등급 7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p> <p>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p> <p>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 발을 리스프랑(발등의 불룩한 부분)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p> <p>9. 한 팔에 가관절(깁스를 하였으나 뼈가 어긋나는 등)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p> <p>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p> <p>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p> <p>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 침수 또는 반과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 침수나 제방붕괴 등이 우려되어 일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대상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 최초 7일간 응급구호비 지급은 장기 구호비에 포함하여 지급 (*10.3.26개정)
(2) 장기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 반과 또는 전과·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제외 - 세입자 보증금을 지원 받는 전·월세입자는 제외 - 침수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침수 : 7일간 구호비 - 주택 반과 : 30일간 구호비 - 주택 전과·유실 : 60일간 구호비 ○ 1인 1일당 지원기준지수 지급 ○ 최초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 구호기금에서 지원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경우, 응급구호비만 지급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3) 생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은 양곡(80kg)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지수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수업료)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수 ○ 지원금액 : 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에 한함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교육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2. 사유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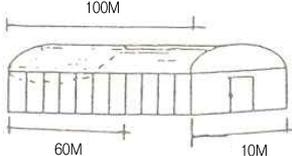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p>※ 1가구 2주택이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포함)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및 영농·영어를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피해규모에 상관 없이 동당 9,000을 기준하되, 반파는 1/2을 적용 ○ 부담률 : 지원 30%, 용자 60%, 자부담 10% ○ 반파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개축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10.3.26개정)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및 용자금 전액 지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하되, 영리시설은 제외 <p>※ 피해발생 시·군·구내의 주택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아가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함 ※ 주택 침수도 동일 적용 ○ 피해구분: 전·반파 구분은 피해 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관사 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로 분류 	<p>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용자비율(60%)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은 지원 ※ 1가구 2주택 확인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역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타 자치단체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 피해자의 인적사항상명 주민등록번호 명세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1가구 2주택 확인 · 국토교통부 확인결과 1가구 2주택자로 확인된 자 중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개인이 소명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 할 수 있음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 주택침수도 동일 적용	
(2)주택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 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 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 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월세입주자도 포함(가족등록 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지원 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600 ○ 부담률 : 지원 100% ○ 소 관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하되, 영리시설은 제외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주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건물주에게 지급토록 함 ※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세입자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 유실·전과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지원액 예시 ○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娵家)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3,000 범위내에서 실제 계약금을 환산한 지수적용 ○ 부담률 : 지원 100% ○ 소 관 : 소방방재청 <p data-bbox="884 801 1259 875"><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 200×6월=1,200 적용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 300×6월=1,800 경우 2,000적용 - 보증금없이 월10만원 세입자 ⇒ 100×6월=600 적용 - 보증금 100만원 10개월 계약 ⇒ 1,000 적용 <p data-bbox="884 1368 1259 1469">※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재난지원지수 3,000을 적용하면 부당함</p>
(4) 마을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피해주민 등이 부담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 주택이축비는 전과주택기준 지원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 국토교통부 소관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농경지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 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농가당 165㎡(매몰심도 10cm 이상) 이상인 경우 지원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 : 매몰심도 10cm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유실면적 : 유실깊이 10cm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 지수 적용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60%, 용자 30%, 자부담 10%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 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 ㎡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 : 매몰면적(㎡)×(지원기준 지수) - 유실 : 유실면적(㎡)×(지원기준 지수) ○ 실패입비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 국고 50%, 지방비 50%
다.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가) 비닐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조제5호 준용 ○ 단순 비닐피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은 전파 반파 구분 조사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원예 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 유리온실은 파손된 유리면적만 산정하여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시설별 지원 기준 지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기준 지정고시』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온실 포함) 전체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 <p>※ 예시</p>  <p>·피해면적=60m×10m=600㎡</p> <p>주의) 100m×10m=1,000㎡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 피해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피해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p>○ 피해액=피해면적 × 피해단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 동의 일부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 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 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나) 인삼재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전파·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형태별의 A형, B형으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지주목 등 자재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원에 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및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시 지원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시설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p> <p>※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의 경우 1/2적용)</p> <p>- 피해면적 : 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 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p> <p>○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조사는 동 예규를 참조하여 조사하되, 인삼의 생육기간별(묘삼6년차)로 침수 기간(2시간~1.5일)에 따라 피해율(10%~100%)을 산정함</p> <table border="1" data-bbox="533 1070 866 1279"> <thead> <tr> <th rowspan="2">생육시기</th> <th colspan="4">침수기간</th> </tr> <tr> <th>2시간</th> <th>0.5일</th> <th>1.0일</th> <th>1.5일</th> </tr> </thead> <tbody> <tr> <td>묘 삼</td> <td>10%</td> <td>30</td> <td>60</td> <td>80</td> </tr> <tr> <td>2년차</td> <td>20</td> <td>40</td> <td>70</td> <td>95</td> </tr> <tr> <td>3년차</td> <td>20</td> <td>50</td> <td>70</td> <td>95</td> </tr> <tr> <td>4년차</td> <td>30</td> <td>50</td> <td>70</td> <td>95</td> </tr> <tr> <td>5년차</td> <td>30</td> <td>60</td> <td>80</td> <td>95</td> </tr> <tr> <td>6년차</td> <td>40</td> <td>70</td> <td>95</td> <td>100</td> </tr> </tbody> </table>	생육시기	침수기간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 삼	10%	30	60	80	2년차	20	40	70	95	3년차	20	50	70	95	4년차	30	50	70	95	5년차	30	60	80	95	6년차	40	70	95	100	<p>○ 부담률</p> <p>-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p> <p>○ 소 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p>
생육시기	침수기간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 삼	10%	30	60	80																																					
2년차	20	40	70	95																																					
3년차	20	50	70	95																																					
4년차	30	50	70	95																																					
5년차	30	60	80	95																																					
6년차	40	70	95	100																																					
다) 버섯 재배사	<p>○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p> <p>- 시설의 종류 : 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조사</p> <p>- 피해정도 구분기준</p> <p>·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p> <p>·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p>	<p>○ 재난지수 산정</p> <p>-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p> <p>-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p> <p>○ 부담률</p> <p>-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p> <p>○ 소 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라) 과수재배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준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 :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방풍망, 간이 비가림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 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m²)×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시설(일반) : 105/m² ·저장시설(저온) : 280/m²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 보관 창고) : 62/m²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 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 피해액 : 피해면적(m²)×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p>	
<p>바) 농산물 건조시설</p>	<p>○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 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여부 확인</p> <p>○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반파로 구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p>○ 피해액 : 피해물량(톤)×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p>	<p>○ 재난지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물량(톤)×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 197/톤 <p>○ 부담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p>○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p>
<p>사) 표고자목 및 표고 버섯재배 시설</p>	<p>○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p> <p>○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p>	<p>○ 재난지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자목 : 피해물량×표고자목 지원기준지수 - 표고재배사 : 피해면적×표고재배사 지원기준지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 요령에 준하여 조사(산림청 소득 52430-132호, 2001.3.12참조)	○ 부담률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 관 : 산림청에서 관리, 소방 방재청에서 지원
아) 잔디, 밤나무, 대추, 뽕은감, 호도, 조경수, 분재 및 야생화, 산림작물	○ 재배지의 유실·매물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면적만 조사하는 등 농작물에 준하여 조사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 에서 제외 ○ 농가(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경수 피해조사에서 제외 ※ 분재는 포지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① 대과대 ○ 재배지의 유실·매물 및 침수 등의 피해로 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잔디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밤나무, 대추, 뽕은감, 호도, 다래, 머루, 약용류 :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 조경수·분재 : 묘목대 지원 기준 지수 ○ 야생화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더덕 : 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부담률 : 지원 50%, 용자 30, 자부담 20% ○ 소관 : 산림청에서 관리, 소방 방재청에서 지원 ② 농약대 ○ 밤나무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농작 물에 준하여 지원 ○ 부담률 : 지원 100%
자) 유의사항	○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 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농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보고하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확정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지 보고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 : 무, 배추기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 : 과채류, 엽채류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 : 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 :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 :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부담률 : 지원 50%, 용자 30%, 자부담 20% ② 농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작물 : ha당 99.88 - 채 소 류 : ha당 222.59 - 과 수 류 : ha당 469.50 - 인 삼 : ha당 161.24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및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 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 신고 유무확인 ○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기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종류 : 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축사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2) 축사부대 시설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종류별, 규모별로 조사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 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 : 한육우, 젓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오리(평사) 분뇨처리시설 ○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사항은 축사피해 조사요령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분뇨처리시설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3) 초지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매몰 피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 등 ○ 조성방법(경운초지, 불경운초지) 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피해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70%, 자부담 30% ○ 소 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계획서 작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잠실 파손· 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매물·전파·반파된 잠실로써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의 종류별 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피해 단가(반파는1/2 적용) ○ 재난으로 인한 잠사에 대하여 유실·매물·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물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 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 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5)가축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매물·전파·반파·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 등 피해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사수×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가축 지원기준지수 ※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종류 및 수량을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매장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조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시 농업통계조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 : 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 대상 : 한우, 젃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p>○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군임업협동조합의 꿩사육 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50%, 용자 30%, 자부담 20% ○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p>※ 육성가축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900 945 1248 1155"> <thead> <tr> <th rowspan="2">축 종</th> <th colspan="2">육 성 축 기 준</th> </tr> <tr> <th>일(월)령</th> <th>체 중</th> </tr> </thead> <tbody> <tr> <td>소</td> <td>12개월령이상</td> <td>250kg이상</td> </tr> <tr> <td>돼 지</td> <td>120일령이상</td> <td>60kg이상</td> </tr> <tr> <td>육 계</td> <td>20일령이상</td> <td>600g이상</td> </tr> <tr> <td>산란계</td> <td>70일령이상</td> <td>850g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 -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 (사양관리기록부 미비시) 확인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12개월령이상	250kg이상	돼 지	120일령이상	60kg이상	육 계	20일령이상	600g이상	산란계	70일령이상	850g이상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12개월령이상	250kg이상																	
돼 지	120일령이상	60kg이상																	
육 계	20일령이상	600g이상																	
산란계	70일령이상	850g이상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6) 누에 유실· 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kg)로 표시 ○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시기, 공급량 등 확인후 피해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 또는 폐사량(kg)×봄·가을 누에 지원기준지수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50%, 용자 30%, 자부담 20% ○ 소 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마. 어선 및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전파 및 반파된 어선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신고필하였거나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미등록 어선 및 원양어선, 외국선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톤수는 신톤수를 적용하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톤수 = 구톤수 × 0.72 ○ 동력, 무동력선으로 구분하여 톤수, 척수조사 ○ FRP, 목선, 강선으로 구분하되, FRP를 피복한 경우에는 목선 및 강선으로 조사 ○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을 기재하고 선박대장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어선의 톤수(신톤수기준)×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톤미만어선 : 지원 35%,용자 55%, 자부담 10% -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 : 용자 70%, 자부담 30%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어선은 제외 ○ 어선피해를 입은자가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반파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소 관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침몰된 어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시 해경 경위 조치 ○ 전파 : 80%이상 파손 및 침몰·유실 ○ 반파 : 35~80%미만 파손 ○ 피해액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어선톤수(신톤수) × 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단가(반파는 1/2적용) ○ 금번 피해어선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폐선인지 확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특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공해상에서 어선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피해보고는 관할 해양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보고 하고 선적지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 · 피해발생 시·군은 피해장소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시·군으로 할 것 · 복구계획은 어선복구는 선적지 시·도지사가, 인명피해(선원)는 주소지 시·도지사가 수립 보고 	
(2)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허가·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유실된 어망·어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당해연도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 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가격 6천만원미만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건조가격 6천만원이상 : 용자 70%, 자부담 3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망, 낭장망, 통발류 등 종류별로 구분 조사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 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반파: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 수리하면 어업이 가능한 상태로써 전체시설대비 백분율로 판단 ○ 면허·허가·신고대장상의 위치, 시설종류, 시설규모와 일치하는지 조사 ○ 어업권자와 피해어업인 일치여부 확인 ○ 면허기간 및 어업의 시기가 맞는지 확인 ○ 당해연도 설치한 자재인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어구 종류별 지원가격 6천만원 미만 복구계획서 작성 ○ 어망·어구복구는 선적지 시·도 지사가 복구계획 수립보고 ○ 소 관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바. 수산물 증·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1)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허가·면허·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양식 시설별 어업권자와 피해어민의 일치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수(減數) 복구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 시설의 반과는 1/2적용, 타시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하고 행사자 별로 피해물량을 산정 - 반과기준은 어망·어구와 같음 <p>※ 해조류 피해복구산정기준액 월별 차등 적용 요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김</td> <td>75</td> <td>67</td> <td>58</td> <td>5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00</td> <td>92</td> <td>83</td> </tr> <tr> <td>미역</td> <td>88</td> <td>76</td> <td>63</td> <td>5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r> <td>다시마</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70</td> <td>50</td> <td>40</td> <td>30</td> <td>20</td> <td>100</td> <td>100</td> </tr> </tbody> </tabl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75	67	58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100	다시마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75	67	58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100																																										
다시마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2) 수산 증·양식 부대시설의 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가두리 시설의 반과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 적용)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 관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증·양식시설 면허대상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 신고서 및 증명서류로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식 판매량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고가능 ○ 유실인 경우 종묘살포계획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물량은 시설 기준별 표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p style="margin-left: 20px;">「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 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p> <p style="margin-left: 20px;">※ 미신고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치</p> ○ 피해 해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 (성어, 중간어, 치어)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종류별 지원기준지수 × 피해수량 ○ 지원기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류, 해조류, 기타류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어류 : 치어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된 성어의 1/2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어장의 환경변화로 피해제발 소지가 있거나 계절적, 수온, 어종품귀, 기타의 사유로 피해어종의 입식이 불가할 때에는 복구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어종으로 대체입식 할 수 있음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p><표준사육기준 : 해상가두리> *기준 : 가두리 가로5m×세로5m×깊이5m대 (cm, g)</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어종별</th> <th colspan="2">최 의</th> <th colspan="2">중 간의</th> <th colspan="2">성 어</th> </tr> <tr> <th>전장 미반</th> <th>소요 기간</th> <th>과대수용 미수</th> <th>범위</th> <th>최대수용 미수 (체중)</th> <th>전장이상 소요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조해박농어</td> <td>13</td> <td></td> <td>22,000</td> <td></td> <td>13,000</td> <td>28(350)</td> </tr> <tr> <td>물동갈성돔</td> <td>13</td> <td></td> <td>20,000</td> <td></td> <td>12,000</td> <td>28(350)</td> </tr> <tr> <td>물동</td> <td>10</td> <td></td> <td>22,000</td> <td></td> <td>13,000</td> <td>20(200)</td> </tr> <tr> <td>면어농성어</td> <td>15</td> <td>입식후 3개월이</td> <td>20,000</td> <td></td> <td>12,000</td> <td>30(500)</td> </tr> <tr> <td>볼락</td> <td>8</td> <td></td> <td>25,000</td> <td></td> <td>20,000</td> <td>16(150)</td> </tr> <tr> <td>방어</td> <td>10</td> <td>내</td> <td>25,000</td> <td>치어 -</td> <td>13,000</td> <td>20(200)</td> </tr> <tr> <td>송어</td> <td>15</td> <td>(연,방어 2개월)</td> <td>25,000</td> <td></td> <td>15,000</td> <td>30(500)</td> </tr> <tr> <td>넙치</td> <td>15</td> <td></td> <td>20,000</td> <td>성어</td> <td>6,000</td> <td>30(500)</td> </tr> <tr> <td>귀치</td> <td>10</td> <td></td> <td>20,000</td> <td></td> <td>12,000</td> <td>20(130)</td> </tr> <tr> <td>황복</td> <td>10</td> <td></td> <td>20,000</td> <td></td> <td>12,000</td> <td>20(250)</td> </tr> <tr> <td>노래미·고등어·권갱이</td> <td>13</td> <td></td> <td>15,000</td> <td></td> <td>10,000</td> <td>28(200)</td> </tr> </tbody> </table> <p>※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치어에 한하여 7m까지 적용 환산 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및 중앙 본부장과 협의후 적용</p>	어종별	최 의		중 간의		성 어		전장 미반	소요 기간	과대수용 미수	범위	최대수용 미수 (체중)	전장이상 소요 기간	조해박농어	13		22,000		13,000	28(350)	물동갈성돔	13		20,000		12,000	28(350)	물동	10		22,000		13,000	20(200)	면어농성어	15	입식후 3개월이	20,000		12,000	30(500)	볼락	8		25,000		20,000	16(150)	방어	10	내	25,000	치어 -	13,000	20(200)	송어	15	(연,방어 2개월)	25,000		15,000	30(500)	넙치	15		20,000	성어	6,000	30(500)	귀치	10		20,000		12,000	20(130)	황복	10		20,000		12,000	20(250)	노래미·고등어·권갱이	13		15,000		10,000	28(200)	<p>※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면양식의 성어” 라 함은 표준사육기준표상의 크기의 성어를 말하며, 지원단가 산정시 성어는 성어의1/2값을, 중간어·치어는 치어값을 적용함</p>
	어종별		최 의		중 간의		성 어																																																																																					
전장 미반		소요 기간	과대수용 미수	범위	최대수용 미수 (체중)	전장이상 소요 기간																																																																																						
조해박농어	13		22,000		13,000	28(350)																																																																																						
물동갈성돔	13		20,000		12,000	28(350)																																																																																						
물동	10		22,000		13,000	20(200)																																																																																						
면어농성어	15	입식후 3개월이	20,000		12,000	30(500)																																																																																						
볼락	8		25,000		20,000	16(150)																																																																																						
방어	10	내	25,000	치어 -	13,000	20(200)																																																																																						
송어	15	(연,방어 2개월)	25,000		15,000	30(500)																																																																																						
넙치	15		20,000	성어	6,000	30(500)																																																																																						
귀치	10		20,000		12,000	20(130)																																																																																						
황복	10		20,000		12,000	20(250)																																																																																						
노래미·고등어·권갱이	13		15,000		10,000	28(200)																																																																																						
	<p>○ 피해 내수면어류의 종류별, 크기 별로 성어 및 치어로 구분 조사 <내수면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어종별</th> <th colspan="3">성어의 크기</th> </tr> <tr> <th>전장(cm)</th> <th>체중(g)</th> <th>소요기간(월)</th> </tr> </thead> <tbody> <tr> <td>송 어</td> <td>30</td> <td>500</td> <td>14</td> </tr> <tr> <td>잉 어</td> <td>32</td> <td>1000</td> <td>22</td> </tr> <tr> <td>뱀 장 어</td> <td>25</td> <td>200</td> <td>16</td> </tr> <tr> <td>향 어</td> <td>30</td> <td>1000</td> <td>22</td> </tr> <tr> <td>가 물 치</td> <td>45</td> <td>2000</td> <td>36</td> </tr> <tr> <td>메 기</td> <td>20</td> <td>200</td> <td>5</td> </tr> <tr> <td>틸 라 피 아</td> <td>22</td> <td>1000</td> <td>14</td> </tr> <tr> <td>은 어</td> <td>22</td> <td>50</td> <td>5</td> </tr> <tr> <td>미 꾸 리</td> <td>11</td> <td>10</td> <td>14</td> </tr> <tr> <td>자 라</td> <td>13</td> <td>500</td> <td>15</td> </tr> <tr> <td>산 천 어</td> <td>25</td> <td>250</td> <td>12</td> </tr> </tbody> </table>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cm)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30	500	14	잉 어	32	1000	22	뱀 장 어	25	200	16	향 어	30	1000	22	가 물 치	45	2000	36	메 기	20	200	5	틸 라 피 아	22	1000	14	은 어	22	50	5	미 꾸 리	11	10	14	자 라	13	500	15	산 천 어	25	250	12	<p>○ 부담률 - 지원 50%, 용자 30%, 자부담 20%</p> <p>○ 소 관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p>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cm)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30	500	14																																																																																									
잉 어	32	1000	22																																																																																									
뱀 장 어	25	200	16																																																																																									
향 어	30	1000	22																																																																																									
가 물 치	45	2000	36																																																																																									
메 기	20	200	5																																																																																									
틸 라 피 아	22	1000	14																																																																																									
은 어	22	50	5																																																																																									
미 꾸 리	11	10	14																																																																																									
자 라	13	500	15																																																																																									
산 천 어	25	250	12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고기의 소요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 ○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장소· 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 	
사. 염전 복구		
(1) 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염전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전을 매몰과 유실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면적 : 매몰심도를 10cm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 염전으로 함 - 유실면적 : 유실깊이 20cm로 기준하여 산술 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 염전으로 함 ○ 염관리법 제3조에 의한 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을 대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관리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를 받은 후 2년이상 염전을 가동 하지 않은 염전 ·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공무원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 및 매몰비 지원 기준 : 농경지 복구기준에 의하여 지원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60%, 용자 30%, 자부담 1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염생산 저장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생산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m²)×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 관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p>야. 기타(공장, 광산, 소상공인 등) 복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광산(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개인별 피해신고를 받은 후 현지 확인 - 광산은 갱도,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 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를 말함 ○ 피해액은 영업결손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을 제외한다. ○ 재난지원금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중소기업청장이 관련기금 또는 용자로 지원하되 부담률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함 ○ 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 재해구호법 14조에 따른 재해 구호기금으로 상가당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 소 관 : 중소기업청에서 관리, 시·도에서 지원
<p>자. 기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훈령에 없는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규정, 예규, 훈령, 지침 등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공공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일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조사는 현지답사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 금액 산정 ○ 하천내 하상퇴적으로 통수단면이 감소한 경우 퇴적토량을 계상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 복구비용 등」에서 정한 피해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 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 공사하차기간내 시설물은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결정 ○ 피해현지 조사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여 사전에 별도 작성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하상 퇴적시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준설비 계상 ○ 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부담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복구사업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②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④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 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⑥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 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 피해액 선정</p> <p>-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p> <p>※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 된 것이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p>	<p>○ 복구공법 선정은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택하고 사용재료와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과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경제성 및 최신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함</p> <p>- 석축, 옹벽 등은 지양하고 친환경 적인 침식방지식생매트 등 신 공법 도입</p> <p>○ 개선복구대상지구는 별도의 설명용 보고서 작성</p> <p>(피해상황, 복구물량, 산출근거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B4규격용지로 작성)</p> <p>○ 국가관리 공공시설중 복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지구는 다음연도까지 집행가능한 사업 비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처에서 다음연도에 별도지원 대책 강구</p> <p>○ 재원부담의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p> <p>- 국가관리 공공시설 : 국고 100%</p> <p>※ 국가지정문화재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한 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p> <p>- 지방관리 공공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p> <p>- 기타 공공시설</p> <p>·소규모시설, 시관내도로(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외) : 지방비 100%</p> <p>○ 복구금액이 “0”인 시설은 피해 금액도 “0”으로 본다</p>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관리 수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한국농어촌공사시설 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사유림 :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시설 : 국고 50%, 용자 50% ·사립학교 : 지방비 50%, 자부담 50% <p>○ 복구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물량×시설공종별 단가 - 기준단가는 자연재난복구 비용산정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기준에 없는 공종은 우선 유사 공종을 적용하고 그 다음 물가정보나 설계 및 견적 가격을 적용 -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계상, 복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대규모 피해 발생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및 공사 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면 개선복구사업이 아니더라도 피해 단위 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p>○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지원 ※ 용역비 적용요율 : 별첨 참조 ※ 소규모시설 단가적용시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 부처별 시설복구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시설		
(1) 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시설대상 : 저수지, 용·배수로, 방조제, 취입보, 양·배수장 등 수리 시설물 관리대장에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관리청별 구분조사(국가, 지방) ○ 농업용이 아닌 취입보, 도시배수 펌프장, 하천배수문은 제외 ○ 시설방조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액은 세부공종별 피해물량을 산정하여 공종별 기준단가를 적용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공종별 복구물량×기준단가 ○ 양배수장 침수로 인한 전기, 기계류 피해복구비는 수리비만 산정하여 복구계획 수립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나) 해양수산부 소관시설		
(1) 어항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의 방파제 물양장 등 부대시설 대상 ○ 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지정어항) 및 소규모 어항으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 지방어항 : 연안어업 자원의 근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본 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복구비 산정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시설(국가어항)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지방·어촌정주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소규모어항 : 지정어항을 제외한 어촌 마을 포구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대장에 등록된 어항) ○ 시설물점검 이력대장, 어항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표지시설, 도선장, 물양장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p>어항,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대장에 등록된 소규모어항) : 국고 50%, 지방비 50%</p> <p>※ 자치단체관리 소규모 어항 : 지방비 100%</p>
(2) 항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상 지정항만내 항만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시설물 대상으로 조사 ○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 :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 항만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및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항만기본계획(무역항, 연안항)이 수립된 지구는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하여 복구비 산정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시설(무역항, 연안항) : 국고 10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파제, 호안, 안벽, 물양장, 표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공중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 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산정은 세부 공중별로 산정 	
다) 국토교통부 소관시설		
(1) 도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상 인정·공고된 국도 및 도로표지판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단순 균열피해는 제외 ○ 노후교량은 금회 피해 진위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은 피해경간 및 교각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전체를 계상하지 말 것 - 적용단가중 피해규격과 다른 경우는 m²등으로 가감 환산 적용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량의 경우 노폭, 교량폭, 가설연도, 재해재발여부, 주민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도로포장공법은 현지여건을 감안하되, 복구비가 저렴한 공법 선택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 국고 100%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농복합형 도시중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군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함
(2) 철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법에 의하여 설치된 궤도, 도상, 둑, 노반 등과 그 부대시설 ○ 선로평면도, 공사대장, 교량카드 등을 참조 조사 ○ 철도공단 관리시설 피해만 선별, 위치, 연장을 측정하고 피해종류별로 수량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계획은 시설피해에 한하여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사업성 복구비는 철도공사 자체예산에 편성 시행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 : 국고 100% - 지방관리 : 국고 50%, 지방비 5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하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기성제조서에 등재된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국가·지방하천별로 조사 ○ 제방 축제·호안·수문 등 하천 부속물 전체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부지의 체육시설물, 주차장 등은 피해조사 제외 ○ 국가하천과 접한 하천의 제방은 국가하천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경우 등 매입대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내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시는 전체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확폭으로 인한 용지매수 필요시 용지매입비를 계상 - 이수·치수기능과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 예방 효과가 크거나 보상비가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 계획을 수립 ○ 실매입비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 : 국고 100% - 지방하천 : 국고 50%, 지방비 50%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 : 국고 100% - 지방하천 : 국고 50%, 지방비 50%
(4) 기타시설 (광역상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환경부 소관 상수도와는 구분 ○ 홍수통제소에서 설치한 수위·우량관측시설 피해액 산정은 설치당시 사업비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상수도 : 국고 100% - 수위·우량관측시설 : 국고 10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안전행정부 소관 시설		
(1) 도로시설	○ 「도로법」상 인정·공고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도로 표지판 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산정 -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군도 : 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 : 지방비 100% - 광역시의 구 및 일반시 관내 동 지역의 도로는 등급에 관계 없이 지방비 100%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시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함 ○ 국토교통부 도로 복구계획과 같음
(2) 농어촌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공고된 도로를 대상 ○ 국토교통부 도로피해 조사와 같음 ※ 피해보고서는 안전행정부 도로에 포함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3) 자전거 도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한 도로를 대상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마) 소방방재청 소관시설		
(1) 소화천	○ 「소화천정비법」에 의해 지정·고시 된 소화천의 제방, 수문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낙차공, 소규모 간이취입보도 포함	○ 호안은 자연친화형 공법을 적용 ○ 하폭이 협소한 곳은 가능한 자연 상태로 두고 인접토지 매입방법을 강구하여 복구계획 수립 ○ 옹벽, 찰쌓기 호안은 피하고 자연친화형 하천이 되도록 계획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2) 지방관리 공공건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등 부대 시설은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사유 ·미가입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 사유임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 시설은 조사	
(3) 소규모 시설	○ 대 상 : 비법정 소하천, 농로, 소교량, 기타 마을공동회관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 소규모시설 : 지방비 100% ○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함.
바) 환경부 소관시설		
(1) 상하수도	○ 상·하수도시설, 하수·폐수 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조사 ○ 인가대장, 관리대장,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조사 ○ 취수시설, 취수장, 관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부대시설별로 피해물량과 금액을 산정하되, 전기·기계시설은 수리비만 계상 ※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시설은 제외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하수도의 토사유입 매물에 따른 준설 피해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2) 공원시설	○ 국립·시도립공원 구역내의 피해 시설 대상 ○ 국립공원 시설피해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하여 보고한 시설에 대하여 조사	○ 부담률 - 국립공원 : 국고 100% - 시·도립공원 : 국고 50%, 지방비 50%
사) 교육부 소관시설		
	○ 학교 교실, 부속건물, 관사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 복구비 산정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대장, 학교시설관리대장등을 참조하여 조사 ○ 교실과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등 건물은 제외하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만 복구비 산정 ※ 교실 등 건물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지원하고 있음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학교 : 국고 100% - 공립학교 : 국고 50%, 지방비 50% - 사립학교 : 지방비 50%, 자부담 50%
<p>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시설</p>		
<p><문화체육관광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 하천부지내에 설치된 시설 및 공원내간에 체육시설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p><문화재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동문화재보호구역내 피해 시설도 포함하여 조사 ○ 피해시설의 위치와 문화재의 명칭 및 관리등급별(국가 지방)로 조사 ○ 피해액 산정은 기준단가로 산정하되, 기준단가가 없는 시설은 문화재청 표준설계 금액을 적용 ※ 일반 농업시설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가 멸실되었거나 붕괴되어 복구가 필요 없을 경우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 문화재 : 국고 100% ※ 단,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재 :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 문화재 : 국고 50%, 지방비 5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자) 산림청 소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사유림 등 소유별로 구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시설, 수목원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자연공원내의 시설·문화재·군사시설 등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복구 주관부처를 결정할 것 ○ 피해액 산정은 피해물량(ha, km, 개소, 본 등)×기준단가로 표시하고 세부내역은 기재할 필요 없음 ○ 피해지 하부 계류의 피해상태를 조사하여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의 시설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반영조치 ○ 산림휴양시설 및 산촌 종합개발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하되, 시설배치도를 참조하여 시설물별 피해정도를 조사할 것 ○ 피해 가로수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본수를 확인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수×기준단가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산간오지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재산 등의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선복구비를 적용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가로수는 피해본수에 기준복구 단가에 부담률을 적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리 : 국고 50%, 지방비 5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차) 부처별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공종별 피해액을 산정 ○ 관공서 건물등은 소관부처별로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시설로 구분 조사 ○ 공원묘지, 화장장 : 보건복지부 ○ 청소년수련시설 : 여성가족부 ○ 관광안내표지판, 일반사찰 (공공 시설), 일반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 : 문화체육관광부 ○ 공설시장 : 중소기업청 ○ 지방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 문화재 등록 사찰 : 문화재청 ○ 도시배수펌프장, 지자체 수위 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등 : 소방방재청 ○ 공공 도축장 : 농림축산식품부 ○ 경찰서건물, 경비초소등 경찰시설 : 경찰청 ○ 탄약, 장비 등 물자를 제외한 군사시설 : 국방부 ○ 기타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시설은 “소방방재청소관 기타”로 할 것 ○ 피해액 산정은 유사공종을 적용 하되, 없는 공종은 소방방재청과 협의 견적 및 설계단가 적용 ○ 사설묘지(공원묘지 등), 사설사회 복지법인 시설(이윤 목적) 등은 조사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가소유의 공공건물 피해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했을 경우라도 보험금이 국고 세외 수입으로 잡혀 그 피해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복구계획에 반영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다.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가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복합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의 가뭄대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가뭄대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3항) :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중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치 ○ 부담액 : 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 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는 제외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2) 쓰레기 처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2차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중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로 실제 처리 비용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거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담률 : 국고 100% ○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쓰레기 : 환 경 부 - 해양쓰레기 : 해양수산부

3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7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41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6호
산림청고시 제2011-56호

2011년 9월 1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구호비, 학자금 등 간접지원 : 100%
 2. 주택, 농업, 임업, 염생산업 : 100%
 3. 어선, 수산생물,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 : 1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재난지원금의 30%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복구완료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반파 또는 침수 되어 이·개축하는 경우
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

③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부 칙 <제2011-16호, 2011.9.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신고되어 확인된 재난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VI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VI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12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6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3호
산림청고시 제2013-46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3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1 이재민구호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 기준지수	비고
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1) 구호금	사망·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10,000	
	사망·실종자(세대원)	인	5,000,000	5,000	
	부상자(세대주)	인	5,000,000	5,000	
	부상자(세대원)	인	2,500,000	2,500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구호비	응급구호비	1인1일	7,000		
	장기구호비	1인1일	7,000	7	
(2) 생계지원	양곡 5가마(80kg)	5가마	853,400	853.4	
다. 학자금(수업료)					
(1) 비전문계	특급지(서울)	6개월	725,400	725.4	
	1급지 “가”(평준화지역)	6개월	700,200	700.2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6개월	685,800	685.8	
	2급지 “가”(읍지역)	6개월	527,400	527.4	
	2급지 “나”(면지역)	6개월	456,600	456.6	
	3급지(도서벽지)	6개월	348,600	348.6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파/유실	동	30,000,000	9,000	
	반파	동	15,000,000	4,500	
(2)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600,000	600	
(3)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3,000	
	임대료	세대	3,000,000	3,000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물	농경지 유실	m ²	2,252	1.35	
	농경지 매물	m ²	876	0.53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비닐하우스	철골켄트온실	m ²	82,715	28.95	
	철골유리온실	m ²	117,390	41.09	
	철골유리온실(유리만)	m ²	8,760	3.07	신설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m ²	30,800	10.78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m ²	7,940	2.78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m ²	9,400	3.29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m ²	3,330	1.17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m ²	3,550	1.24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m ²	3,420	1.20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m ²	2,280	0.80	
	내재해형-자동화(07,08형)	m ²	34,600	12.11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내재해형-자동화(10형)	m ²	48,080	16.83	
	내재해형-단동(정부)	m ²	15,000	5.25	
	내재해형-단동(딸기)	m ²	16,790	5.88	
	내재해형-단동(참외)	m ²	5,700	2.00	
	내재해형-단동(광폭 아치형)	m ²	20,760	7.27	
	내재해형-단동(광폭 트러스형)	m ²	35,280	12.35	
	내재해형-단동(민간1,2형)	m ²	15,000	5.25	
	내재해형-단동(민간3,4형)	m ²	25,000	8.75	
	내재해형-단동(민간 8)	m ²	18,040	6.31	
	내재해형-단동(민간광폭형)	m ²	45,000	15.75	
	내재해형-연동하우스	m ²	40,000	14.00	
	내재해형-과수하우스	m ²	25,000	8.75	
-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m ²	4,700	1.65	
	차광시설A형-연목240×36×30cm	m ²	2,910	1.02	
	차광시설B형-연목180×36×30cm	m ²	2,750	0.96	
-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m ²	403,000	141.05	
	판넬재배사	m ²	151,000	52.85	
	간이재배사	m ²	75,000	26.25	
-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m ²	1,720	0.60	
	지주시설	m ²	830	0.29	
	방조망	m ²	1,600	0.56	
	관수시설	m ²	980	0.34	
	방풍망시설	m ²	1,020	0.36	
	간이비가림시설	m ²	1,270	0.44	
-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일반)	m ²	300,000	105.00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m ²	800,000	280.00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562,500	196.88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m ²	177,000	61.95	
	퇴비제조시설	m ²	177,200	62.02	신설
- 양액재배시설	내부시설	m ²	10,800	3.78	
- 염전시설	염전 소금창고	m ²	208,500	72.98	
	염전 해주	m ²	69,500	24.33	
	결정지(유실)	m ²	377	0.23	
	결정지(매물)	m ²	188	0.11	
- 산림시설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m ²	27,008	9.45	
	표고재배사(툽밭배지 표고양묘)	m ²	34,900	12.22	신설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m ²	4,460	1.56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m ²	5,090	1.78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m ²	6,340	2.22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m ²	6,700	2.35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m ²	7,140	2.50	
-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재난지수의 10%	과수목 포함
- 임업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재난지수의 10%	신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					
- 농작물	일반작물(무, 배추기준)	m ²	220	0.11	
	시설채소(엽채류)	m ²	297	0.15	
	시설채소(과채류)	m ²	392	0.20	
	시설채소(토마토, 풋고추, 가지)	m ²	284	0.14	
	시설채소(오이, 딸기)	m ²	685	0.34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시설채소(파프리카)	m ²	902	0.45	
	인삼(묘삼기준)	m ²	1,505	0.75	
	과수(묘목기준)-사과	m ²	1,239	0.62	
	과수(묘목기준)-배	m ²	271	0.14	
	과수(묘목기준)-복숭아	m ²	218	0.11	
	과수(묘목기준)-포도	m ²	220	0.11	
	과수(묘목기준)-단감	m ²	196	0.10	
	과수(묘목기준)-감귤	m ²	365	0.18	
	과수(묘목기준)-참다래	m ²	307	0.15	
	화훼-백합(생육초기)	m ²	4,087	2.04	
	화훼-장미(생육초기)	m ²	2,980	1.49	
	화훼-선인장(생육초기)	m ²	2,774	1.39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m ²	3,168	1.58	
	화훼-안개초(생육초기)	m ²	1,200	0.60	
	화훼-국화(생육초기)	m ²	1,296	0.65	
	화훼-카네이션(생육초기)	m ²	4,232	2.12	
	화훼-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m ²	1,959	0.98	
	화훼-호접란(생육초기)	m ²	6,577	3.29	
	버섯류(중균기준) - 식용류	m ²	4,200	2.10	
	버섯류(중균기준) - 약용류	m ²	4,312	2.16	신설
	녹차(묘목기준)	m ²	659	0.33	
	구기자(종묘기준)	m ²	257	0.13	
	당귀(종묘기준)	m ²	265	0.13	
	산약(종묘기준)	m ²	418	0.21	
	뽕나무(누에 사육용)	m ²	1,575	0.79	
	뽕나무(오디 생산용)	m ²	815	0.41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 산림작물	표고자목(1.2m)	본	2,200	0.77		
	잔디(과중생산비)	m ²	432	0.22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m ²	2,482	1.24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m ²	2,482	1.24		
	유실수(묘목기준)-밤	m ²	107	0.05		
	유실수(묘목기준)-대추	m ²	199	0.10		
	유실수(묘목기준)-뽕은감	m ²	175	0.09		
	유실수(묘목기준)-호도	m ²	154	0.08		
	유실수(묘목기준)-은행	m ²	147	0.07	신설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m ²	335	0.17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m ²	716	0.36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m ²	655	0.33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m ²	542	0.27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m ²	255	0.13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m ²	399	0.20		
	산림작물(종자대)-더덕	m ²	391	0.20		
	산림작물(종자대)-두릅	m ²	640	0.32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m ²	206	0.10		
	산림작물(종자대)-산양삼	m ²	808	0.40		
	산림작물(종자대)-약초류	m ²	266	0.13		
	산림작물(종자대)-표고톱밥배지	m ²	15,240	7.62	신설	
	② 농약대 - 농림작물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m ²	10	0.01	
		병해충방제(채소류)	m ²	29	0.03	
병해충방제(과수류)		m ²	47	0.05		
병해충방제(인삼)		m ²	17	0.02		
병해충방제(약용류)		m ²	52	0.05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 산림작물	병해충방제(화훼류)	m ²	218	0.22	
	병해충방제(산채류)	m ²	29	0.03	신설
	병해충방제(수실류)	m ²	47	0.05	신설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m ²	17	0.02	신설
	병해충방제(약용류)	m ²	52	0.05	신설
	병해충방제(야생화)	m ²	218	0.22	신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우사-한육우사	m ²	121,000	42.35	
	우사-유우사	m ²	158,000	55.30	
	돈사-번식돈사	m ²	239,500	83.83	
	돈사-비육돈사	m ²	165,000	57.75	
	계사-산란계사	m ²	200,500	70.18	
	계사-육계사	m ²	168,500	58.98	
	계사-육용종계사	m ²	180,000	63.00	신설
	토사-육토사	m ²	70,000	24.50	
	종오리사	m ²	130,000	45.50	
	육용오리사	m ²	130,000	45.50	
	부화장	m ²	504,000	176.40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m ²	39,000	13.65	
(2) 축산분뇨시설					
	분뇨처리시설-한육우	m ²	78,500	27.48	
	분뇨처리시설-젓소	m ²	78,500	27.48	
	분뇨처리시설-돼지	m ²	78,500	27.48	
	분뇨처리시설-닭(평사)	m ²	78,500	27.48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m ²	78,500	27.48	
	분뇨처리시설-오리	m ²	78,500	27.48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3) 초지유실	초지복구(경운초지)	ha	3,854,000	-	
	초지복구(불경운초지)	ha	2,763,000	-	
(4) 잠실파손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아잠실)	m ²	297,000	103.95	
	애누에공동잠실(브릭밧패널형)	m ²	247,500	86.63	
	일반잠실(브릭형)	m ²	172,420	60.35	
	조상육잠실(조립식)	m ²	27,500	9.63	
(5) 가축입식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1,400,500	700.25	
	한우-육성우	마리	1,560,000	780.00	
	젖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341,728	170.86	
	젖소-육성우	마리	1,102,000	551.00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62,000	31.00	
	돼지-육성돈	마리	139,000	69.50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427	0.21	
	육계-중추	마리	740	0.37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611	0.31	
	산란계-중추	마리	1,877	0.94	
	종계-병아리(육용)	마리	1,123	0.56	
	종계-병아리(산란용)	마리	3,400	1.70	
	종계-병아리(토종닭)	마리	2,533	1.27	
	토종닭-병아리	마리	229	0.11	
	토종닭-중추	마리	1,036	0.52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89,000	44.50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3,730	1.87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664	0.33	
	오리-중추	마리	2,564	1.28	
	종오리-새끼	마리	4,786	2.39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원종오리-새끼	마리	39,500	19.75	
	꿀벌-개량종(1군)	군	140,760	70.38	
	꿀벌-토종(1군)	군	160,000	80.00	신설
	인공사육(쟁)-병아리(2-4개월령)	마리	1,665	0.83	
	사슴-자록	마리	510,033	255.02	
	사슴-자록(엘크)	마리	688,000	344.00	
	사슴-자록(꽃사슴)	마리	140,000	70.00	
	사슴-자록(레드디어)	마리	180,000	90.00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528,000	264.00	
	말(경주마 망아지)	마리	7,026,400	3,513.20	신설
	말(경주마)	마리	12,824,400	6,412.20	
	개(강아지)	마리	29,000	14.50	
	칠면조-병아리	마리	3,760	1.88	
	거위-병아리	마리	4,631	2.32	
	메추리-새끼	마리	137	0.07	
	지렁이	m ²	13,332	6.67	
	금계-병아리	마리	30,000	15.00	
	은계-병아리	마리	74,980	37.49	
	백한-병아리	마리	40,000	20.00	
	공작-병아리	마리	250,000	125.00	
(6) 누에 유실·폐사	유실/폐사-봄누에	kg	11,000	5.50	
	유실/폐사-가을누에	kg	11,000	5.50	
(7) 곤충	천적(무당벌레, 풀잡자리, 흑파리, 꽃등에)	마리	99	0.05	신설
	천적(노린재, 반날개)	마리	44	0.02	신설
	천적(이리응애)	마리	3	0.002	신설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환경 사료용(등애등에류)	마리	32	0.02	신설
	학습용(시슴갈래류, 장수풍뎡이류)	마리	1,400	0.70	신설
(1) 선박	동력선-강선	톤	7,000,000	2,450.00	
	동력선-FRP	톤	8,440,000	2,954.00	
	동력선-목선	톤	7,000,000	2,450.00	
	무동력선-FRP	톤	5,023,000	1,758.05	
	무동력선-목선	톤	3,484,000	1,219.40	
(2) 어망어구-정치망류	대모망(대)-남해	통	52,376,000	18,331.60	
	개대망(대)-남해	통	53,655,000	18,779.25	
	개대망(중)-남해	통	48,051,000	16,817.85	
	개대망(소)-남해	통	46,041,000	16,114.35	
	낙망(대)-남해	통	53,166,000	18,608.10	
	낙망(대)-동해	통	112,700,000	39,445.00	
	낙망(중)-동해	통	46,150,000	16,152.50	
	낙망(소)-남해	통	29,080,000	10,178.00	
	낙망(소)-서해	통	11,632,000	4,071.20	
	각망(대)-남해	통	43,409,000	15,193.15	
	각망(중)-동해	통	17,697,000	6,193.95	
	각망(중)-남해	통	1,462,400	511.84	
	각망(중)-서해	통	600,000	210.00	
	소대망(대)-남해	통	58,111,735	20,339.11	
	소대망(중)-남해	통	37,612,300	13,164.31	
	소대망(소)-남해	통	29,740,000	10,409.00	
	죽방렴(대)-남해	통	34,284,000	11,999.40	
	죽방렴(소)-남해	통	27,366,000	9,578.10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 정치성어구류	낭장망-서해	통	2,750,000	962.50	
	낭장망-남해	통	2,900,000	1,015.00	
	각망-남해	통	1,065,400	372.89	
	삼각망-서해	통	1,450,000	507.50	
	호망-동해	통	11,210,000	3,923.50	
	호망-남해	통	4,140,000	1,449.00	
	건망-동해	통	29,260,000	10,241.00	
	건망-남해	통	9,790,000	3,426.50	
	승망-남해	통	1,727,000	604.45	
	근해안강망	통	4,736,800	1,657.88	
	연안개량안강망	통	4,060,000	1,421.00	
	각망-내수면	통	190,000	66.50	
	돌추 낭장망 200코(대형)	통	148,000	51.80	
	닷자망-서해	틀	7,139,324	2,498.76	
	- 유자망류	꽁치-동해(1척기준:40폭)	폭	66,000	23.10
오징어-동해(1척기준:50폭)		폭	55,000	19.25	
멸치-남해(1척기준:25폭)		폭	368,120	128.84	
삼치-남서해(1척기준:230폭)		폭	72,410	25.34	
참조기-서해(1척기준:350폭)		폭	44,850	15.70	
학꽁치-동남해(1척기준:15폭)		폭	55,890	19.56	
방어-동해(1척기준:20폭)		폭	133,460	46.71	
명태-동해(1척기준:150폭)		폭	70,840	24.79	
양머리-동해(1척기준:20폭)		폭	209,000	73.15	
꽃게(1척기준:240폭)		폭	30,000	10.50	명칭변경
청어-동해(1척기준:30폭)		폭	87,000	30.45	
도루묵-동해(1척기준:50폭)		폭	40,000	14.00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 고정자망류	아귀-동남해(1척기준:25폭)	폭	72,000	25.20	
	넙치-동해(1척기준:30폭)	폭	32,000	11.20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000	11.20	
	꽃게-서해(1척기준:1000폭)	폭	18,973	6.64	
	자망-내수면(1척기준:3폭)	폭	22,000	7.70	
- 인망류	멸치권현망-남해(1척기준)	통	26,461,500	9,261.53	
- 통발류	붉은대게-동해(1척기준:1,200개)	개	10,725	3.75	
	붕장어(그물)-전해역(1척기준:1,000개)	개	4,760	1.67	
	붕장어(플라스틱) # 5,000개	개	1,229	0.43	
	골뱅이-동해(1척기준:2,000개)	개	4,770	1.67	
	꽃게-서해(1척기준:1500개)	개	8,234	2.88	
	꽃게(1척기준:2500개)	개	2,800	0.98	
	물메기-남해(1척기준:1500개)	개	4,483	1.57	
	쭈꾸미-서해(1척기준:10,000개)	개	358	0.13	
	통발-내수면(1척기준:100개)	개	5,500	1.93	
	낙지(1척기준:2500개)	개	1,822	0.64	
	도다리(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000	5.60	
	귀치(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000	5.60	
	문어단지	개	700	0.25	명칭변경
	문어통발-남해	개	3,200	1.12	
	통발-남해	개	2,540	0.89	
	소라(1척기준:1,000개)	개	172	0.06	신설
- 낚시류:주낙	명태-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45	1.14	
	넙치-남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23,840	8.34	
	농어-서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37,510	13.13	
	붕장어-남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25,840	9.04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 패류	옥돔-남해(1척기준:70바스켓)	바스켓	17,580	6.15	
	문어-동해(1척기준:30바스켓)	바스켓	9,750	3.41	
	가지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11,413	3.99	
	주낙-내수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32,000	11.20	
	주낙-농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15,080	5.28	
	삼치-동남해(1척기준:6개)	개	33,200	11.62	
	장어-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000	14.00	
	도다리-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000	14.00	
	굴(간석지투석식)	ha	11,477,000	4,016.95	
	굴(연승수하식)-100m당	줄	403,879	141.36	
	굴(수평망식)-3.6m ² 당	대	220,000	77.00	
	굴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602,305	210.81	
	굴채묘(간이수하식)-25×2m당	대	349,112	122.19	
	피조개(천해살포식)	ha	582,820	203.99	
	피조개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401,958	140.69	
	바지락(간석지살포식)	ha	553,000	193.55	
	홍합(연승수하식)-100m당	줄	416,750	145.86	
	새고막(천해살포식)	ha	746,000	261.10	
	새고막채묘(지주수평식)-100m당	대	159,000	55.65	
고막(간석지살포식)	ha	423,500	148.23		
가무락(간석지살포식)	ha	1,130,000	395.50		
동죽(간석지살포식)	ha	230,000	80.50		
백합(간석지살포식)	ha	2,163,200	757.12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 해조류	전복(천해투석식)	ha	2,444,000	855.40	명칭변경
	전복(연승수하식)-100m당	줄	1,532,500	536.38	
	전복(육상수조식3.3m ²)	m ²	115,252	40.34	
	전복(해상가두리-내파성 24×24m)	칸	252,058	88.22	
	전복종묘생산(육상수조식3.3m ²)	m ²	117,975	41.29	
	가리비(연승채롱식)-100m당	줄	4,332,000	1,516.20	
	가리비(연승키메달이식)-100m당	줄	2,595,000	908.25	
	가리비(천해살포식)	ha	250,000	87.50	
	가리비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2,244,550	785.59	
	진주조개(연승수하식)-100m당	줄	762,575	266.90	
	키조개(천해이식)	ha	1,428,800	500.08	
	꼬시래기(연승수하식 100m)	줄	64,200	22.47	
	김(지주망홍식)-2.2×40m당	책	325,000	113.75	신설
	김(부류망홍식)-2.2×40m당	책	454,800	159.18	
	김(지주죽홍식)-1.8×40m당	책	177,000	61.95	
	미역(연승수하식)-100m당	줄	230,572	80.70	
	다시마(연승수하식)-100m당	줄	165,000	57.75	
	툇(연승수하식)-100m당	줄	118,000	41.30	
	참모자반(연승수하식)-100m당	줄	96,525	33.78	
	청각(연승수하식)-100m당	줄	89,306	31.26	
매생이(2.2m×40m)	책	83,160	29.11		
과래(2.2m×40m)	책	33,264	11.64		
- 어류	어류양식(육상수조식)	m ²	125,537	43.94	신설
	어류양식(해상가두리)-5×5m당	칸	1,461,000	511.35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5×5m당	칸	2,587,000	905.45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10m	조	48,823,856	17,088.35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 기타류	어류양식(외해)용 가두리-내수형 25m	조	25,882,825	9,058.99	
	중묘생산(육상수조식)	m ²	74,787	26.18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654	11.08	
	우렁챙이(연승수하식)-100m당	줄	783,812	274.33	
	성계(연승수하식)-100m당	줄	1,373,000	480.55	
	새우(축제식)	ha	13,000,000	4,550.00	
	미더덕류(관그물 100m)	줄	344,775	120.67	
- 내수면양어장	미더덕류(봉그물 100m)	줄	651,630	228.07	
	양어장(철근콘크리트)	m ²	102,070	35.72	
	가두리양어장(5×5m×4칸)	조	2,748,570	962.00	
	관리사	m ²	139,150	48.70	
	양어장관널지붕형-철골구조	m ²	121,550	42.54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654	11.08	
	일반비닐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76	1.11	신설
- 기타시설	해양가두리양식양관리시설(4m×6m)	m ²	833,333	291.67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m ²	2,480,159	868.06	
	양식선물처리시설(18m×22m)-건이	m ²	202,020	70.71	
	소각식분료처리시설	m ²	4,000,000	1,40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PE무결 Ø40mX16m)	통	26,400,000	9,24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PE무결, Ø40mX16m)	통	11,920,000	4,172.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낫셀 Ø40mX16m)	통	6,880,000	2,408.00	
- 철거비	수산증양식시설철거	지수		재난지수의 10%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 패류	굴(단련종패142연)-수하식 100m	줄	568,000	284.00		
	전복(2cm미만)-투석식2만비/ha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350	0.18		
	전복(2cm이상)-투석식2만비/ha,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770	0.39		
	피조개(각장2cm내외,1톤)-살포식	ha	6,000,000	3,000.00		
	바지락(각장1~2cm,3톤)-살포식	ha	3,750,000	1,875.00		
	홍합(각장2~3cm,142연)-수하식	100m	137,500	68.75		
	새고막(각장2cm내외,1톤)-살포식	ha	1,650,000	825.00		
	고막(각장2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3,000.00		
	가무리(각장2.5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3,000.00		
	동죽(각장1~2cm,3톤)-살포식	ha	900,000	450.00		
	백합(각장1~3cm,3톤)-살포식	ha	15,000,000	7,500.00		
	가리비(각장5~7cm,13천미)-수하식	100m	1,050,000	525.00		
	가리비(각장5~7cm,15천미)-채통식	100m	1,050,000	525.00		
	가리비(각장5~7cm,38천미)-가래채식	100m	2,660,000	1,330.00		
	가리비(각장3~5cm,100천미)-살포식	ha	3,500,000	1,750.00		
	진주조개(각5cm내외,880미)-수하식	100m	2,500,000	1,250.00		
	진주조개(직경7mm, 핵2관)	핵	1,400,000	700.00		
	키조개종패(이식, 각장 15~20cm)	ha	20,000,000	10,000.00		
	굴(각장 1cm내외, 수평망식)	마리	16	0.01		
	굴(각장 7~10cm내외, 수평망식)	마리	140	0.07		
	- 해조류	김(50개/상자,2상자)-건홍식	책	10,000	5.00	
		미역(종묘수량150m)-수하식만기산	100m	12,500	6.25	
		미역(종묘수량150m)-조기산	100m	17,500	8.75	
다시마(종묘수량150m)-수하식		100m	20,000	10.00		
툇(5~20cm,15kg)-수하식		100m	100,000	50.00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 기타류	참모지반(종묘수량60m)-수하식	100m	100,000	50.00	
	우렁쟁이(종묘량3,000m)-수하식, 줄	100m	1,841,400	920.70	
	우렁쟁이종묘-연승수하식,줄	100m	468,600	234.30	
	성게(체장2~3cm1,500미)-수하식	100m	900,000	450.00	
	새우(체장2cm내외200천미)-축제식	ha	1,225,000	612.50	
	새우(체장2cm내외)-육상수조식	마리	10	0.01	
	다슬기-각고0.7~1.4cm내외	kg	74,250	37.13	
- 해면양식어류	해삼(3~4)cm	마리	176	0.09	
	갯지렁이(치충-1년생미만)	마리	32	0.02	신설
	갯지렁이(성충-1년생미만)	마리	80	0.04	신설
	방어(작은고기5~7cm)	마리	600	0.30	
	방어(큰고기)	마리	1,708	0.85	
	넙치(작은고기5~7cm)	마리	521	0.26	
	넙치(큰고기)	마리	2,900	1.45	
	우럭(작은고기5~7cm)	마리	402	0.20	
	우럭(큰고기)	마리	1,880	0.94	
	도미(작은고기5~7cm)	마리	410	0.21	
	도미(큰고기)	마리	3,040	1.52	
	농어(작은고기5~7cm)	마리	400	0.20	
	농어(큰고기)	마리	3,280	1.64	
	노래미(작은고기5~7cm)	마리	341	0.17	
	노래미(큰고기)	마리	1,925	0.96	
	불락(작은고기5~7cm)	마리	360	0.18	
	불락(큰고기)	마리	3,850	1.93	
능성어(작은고기5~7cm)	마리	1,650	0.83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능성어(큰고기)	마리	15,890	7.95	
	쥐치(작은고기7~8cm)	마리	350	0.18	
	쥐치(큰고기)	마리	3,280	1.64	
	숭어(작은고기5~8cm)	마리	400	0.20	
	숭어(큰고기)	마리	1,920	0.96	
	고등어(작은고기5~8cm)	마리	200	0.10	
	고등어(큰고기)	마리	1,750	0.88	
	전어(작은고기5~7cm)	마리	32	0.02	
	전어(큰고기)	마리	250	0.13	
	강도다리(작은고기5~7cm)	마리	1,580	0.79	
	강도다리(큰고기)	마리	4,515	2.26	
	솜뱅이(작은고기 5~7cm)	마리	180	0.09	
	솜뱅이(큰고기)	마리	2,800	1.40	
	황점볼락(작은고기 5~7cm)	마리	213	0.11	
	황점볼락(큰고기)	마리	4,150	2.08	
	복어(작은고기)	마리	240	0.12	
	복어(큰고기)	마리	2,000	1.00	
	민어(작은고기)	마리	200	0.10	
	민어(큰고기)	마리	1,000	0.50	
	감성돔(작은고기5~8cm)	마리	160	0.08	
	감성돔(큰고기)	마리	2,680	1.34	
	돌돔(작은고기5~7cm)	마리	160	0.08	
	돌돔(큰고기)	마리	1,400	0.70	
	참다랑어(작은고기 30cm이하)	마리	40,000	20.00	
	참다랑어(큰고기 80cm이상)	마리	400,000	200.00	
- 내수면양식어류	송어(작은고기4~5cm)	마리	228	0.11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송어(큰고기)	마리	2,320	1.16	
	잉어(작은고기3~5cm)	마리	66	0.03	
	잉어(큰고기)	마리	8,000	4.00	
	뱀장어(작은고기4~5cm,0.2g)	마리	1,500	0.75	
	뱀장어(큰고기)	마리	2,750	1.38	
	향어(작은고기3~5cm)	마리	66	0.03	
	향어(큰고기)	마리	1,565	0.78	
	가물치(작은고기5~7cm)	마리	280	0.14	
	가물치(큰고기)	마리	8,000	4.00	
	메기(작은고기5~7cm)	마리	143	0.07	
	메기(큰고기)	마리	806	0.40	
	틸라피아(작은고기5~6cm)	마리	240	0.12	
	틸라피아(큰고기)	마리	2,800	1.40	
	은어(작은고기3~4cm)	마리	210	0.11	
	은어(큰고기)	마리	1,160	0.58	
	미꾸리(작은고기3~4cm)	마리	40	0.02	
	미꾸리(큰고기)	마리	80	0.04	
	자라(작은고기3~4cm)	마리	3,200	1.60	
	자라(큰고기)	마리	8,847	4.42	
	산천어(작은고기4~5cm)	마리	560	0.28	
	산천어(큰고기)	마리	3,200	1.60	
	동자개(작은고기5~6cm)	마리	137	0.07	
	동자개(큰고기)	마리	260	0.13	
	붕어(작은고기3~5cm)	마리	69	0.03	
	붕어(큰고기)	마리	400	0.20	
	우렁이(작고1.3cm내외)	kg	3,395	1.70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대농갱이(작은고기 5~7cm)	마리	110	0.06	
	대농갱이(성어 1/2고기)	마리	360	0.18	
	철갑상어(작은고기 10~15cm)	마리	1,600	0.80	
	철갑상어(성어 1/2고기)	마리	9,000	4.50	
	쏘가리(작은고기 3~5cm)	마리	580	0.29	
	쏘가리(성어 1/2고기)	마리	12,000	6.00	
	버들치(작은고기 2~3cm)	마리	12	0.01	
	버들치(성어)	마리	60	0.03	
	비단잉어(성어)	마리	10,000	5.00	
	열대어 구피(드래곤헤드-3cm)	마리	100	0.05	
	열대어 구피(브론즈-3cm)	마리	160	0.08	
	열대어 구피(점원-3cm)	마리	280	0.14	
	열대어 구피(슈퍼화이트-3cm)	마리	1,200	0.60	
	열대어 구피(플레드-3cm)	마리	1,200	0.60	
	열대어 플레티(2cm)	마리	100	0.05	
	열대어 엔젤(3cm)	마리	280	0.14	
	열대어 고리도라스(2cm)	마리	60	0.03	
	열대어 체부라(3cm)	마리	40	0.02	
	열대어 블랙테트라(2cm)	마리	60	0.03	
	황복(작은고기 4~5cm)	마리	200	0.10	
	황복(성어 25cm)	마리	12,000	6.00	
	꼭지(작은고기 3~4cm)	마리	320	0.16	신설
	꼭지(성어 10~20cm)	마리	800	0.40	신설

3 공공시설

공종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가. 공통사항				
(1) 떼	줄떼	m ²	9,283	
	평떼	"	14,827	
(2) 석축	메쌓기(H=3m미만)	"	142,023	
	(H=3m~6m)	"	203,511	
	찰쌓기(H=3m미만)	"	177,786	
	(H=3m~6m)	"	228,837	
(3)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sigma_{28}=210\text{kg/cm}^2$)-레미콘	m ³	134,912	
	($\sigma_{28}=180\text{kg/cm}^2$)-"	"	129,240	
	($\sigma_{28}=210\text{kg/cm}^2$)-인력비빔	"	332,406	
	($\sigma_{28}=180\text{kg/cm}^2$)-"	"	328,870	
	무근콘크리트($\sigma_{28}=210\text{kg/cm}^2$)-레미콘	"	130,162	
	($\sigma_{28}=180\text{kg/cm}^2$)-"	"	124,434	
	($\sigma_{28}=135\text{kg/cm}^2$)-"	"	123,535	
	($\sigma_{28}=180\text{kg/cm}^2$)-인력비빔	"	292,620	
($\sigma_{28}=135\text{kg/cm}^2$)-"	"	294,181		
(4) 철근가공조립	보통	톤	1,440,917	
(5) 거푸집	4회사용(수로, 측구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m ²	32,034	
(6) 견치블럭쌓기	스톤무늬견치	m ²	174,934	
(7) 돌망태옹벽	게비온 설치(1.0*1.0*2.0)	m ³	316,899	
	게비온 설치(1.0*1.0*1.5)	"	281,519	
(8) 식생매트	침식방지 식생매트(18mm)	m ²	30,166	
	침식방지 식생매트(25mm)	"	30,166	
	친환경 PLA섬유 식생매트(ES-301)	"	21,885	신기술
	친환경 PLA섬유 식생매트(ES-302)	"	25,405	신기술
나. 도로 및 교량				
(1) 도로	확포장(비포장→2차선), 노폭=9m	m	6,281,385	

공종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2→4차선), 노폭=18.5m	"	10,678,355	
	신설(2차선), 노폭=11m	"	6,909,524	
	(4차선), 노폭=18.5m	"	12,201,590	
(2) 시군도및농어촌도로	시군도	m	1,884,416	
	농어촌도로	"	890,217	
(3) 자진거도로				
- 일반도로	평지부 편측설치(B=3.0m)	m	397,558	
	평지부 양측설치(B=1.5m x 2)	"	562,100	
	성토부 편측설치(B=3.0m)	"	534,506	
	성토부 양측설치(B=1.5m x 2)	"	721,532	
	절토부 편측설치(B=3.0m)	"	591,738	
	절토부 양측설치(B=1.5m x 2)	"	814,534	
- 제방도로	하천(B=3.0m)	"	216,664	
	방조제(B=3.0m)	"	380,184	
- 도로다이아트(도시지역)	편측(B=3.0m)	"	321,930	
	양측(B=1.5m x 2)	"	522,242	
	* 도로다이아트: 기존도로의 차선조정 및 갓길포장			
(4) 교량	Slab교(확대기초,교각6m) -2차선(10m)	"	16,500,808	
	(파일.우물통기초,교각6m)- "	"	18,112,823	
	Slab교(확대기초,교각6m) -4차선(19.5m)	"	28,290,914	
	(파일.우물통기초,교각6m)- "	"	30,318,408	
	P.CBeam교(확대기초,교각7m) -2차선(10m)	"	16,127,109	
	(파일.우물통기초,교각7m)- "	"	17,816,881	
	P.CBeam교(확대기초,교각7m) -4차선(19.5m)	"	28,162,092	
	(파일.우물통기초,교각7m)- "	"	31,823,651	
	P.CBox교(파일.우물,교각15m)-4차선(19.5m)	"	31,823,651	
	Steel Box교(확대,교각10m) -4차선(19.5m)	"	48,589,068	
	(파일.우물통기초,교각10m)- "	"	51,315,217	
(5) 가설교량	재해복구용 H형강에 교강도 강판을 부착한	"	10,936,58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다. 도로시설물	프리스트레스거더 가설교량 제작시공(B=8.0m, H=15.0m)				
	재해복구용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부착한 프리스트레스거더 가설교량 제작시공(B=8.0m, H=10.0m)	"	10,596,401		
	소규모 하천용 접이식 임시가설 보도교 (B=0.5m, H=1.0m, L=6.0m)	개소	5,353,597		
	소규모 하천용 접이식 임시가설 보도교 (B=0.5m, H=1.0m, L=12.0m)	"	28,693,912		
	(1) 토공	도로사태	m ³	9,798	
		침식 및 유실	"	24,354	
	(2) 포장공	아스콘포장 (B.B기층)	a	6,595,454	
		콘크리트포장(T=28cm, 보조기층:32cm)	"	5,934,780	
	(3) 구조물공	옹벽 : 중력식(H=2m)	m	459,608	
		(H=3m)	"	803,197	
		(H=4m)	"	1,249,805	
		역 T형(H=4m)	"	1,336,991	
		(H=5m)	"	1,924,277	
		(H=6m)	"	2,410,103	
	(H=7m)	"	3,360,106		
	자생토낭 보강토옹벽(H=3m)	"	1,056,300	신기술	
	자생토낭 보강토옹벽(H=5m)	"	2,090,323	신기술	
	암거 : 구 체(1.0 ×1.0m)	"	1,045,251		
	(1.5 ×1.5m)	"	1,554,046		
	(1.5 ×1.5m ×2련)	"	2,276,871		
	(1.5 ×2.0m)	"	1,524,089		
	(2.0 ×2.0m)	"	2,205,253		
	(2.0 ×2.0m ×2련)	"	2,897,223		
	(2.0 ×2.0m ×3련)	"	3,901,235		
	(2.5 ×2.5m)	"	2,752,831		
	(2.5 ×2.5m ×2련)	"	3,752,267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3.0 ×3.0m)	"	3,527,159	
	(3.0 ×3.0m ×2런)	"	4,738,493	
	(3.5 ×3.5m ×2런)	"	6,301,335	
	날개벽(1.0 ×1.0m)	개소	1,661,821	
	(1.5 ×1.5m)	"	3,165,435	
	(2.0 ×2.0m)	"	5,024,905	
	(2.5 ×2.5m)	"	7,751,794	
	(3.0 ×3.0m)	개소	11,513,152	
	배수관 : 흡관(D= 600mm)	m	230,000	
	(D= 800mm)	"	365,000	
	(D=1,000mm)	"	555,000	
	(D=1,200mm)	"	775,000	
(4) 배수구조물	측 구 L형 (B=50cm)	"	44,279	
	L형 (B=100cm)	"	81,723	
	L형측구 옹벽(B=45cm)	"	152,472	
	산마루 측구(H=45cm)	"	153,952	
(5) 부대시설	낙석 방지책(H=3m)	"	194,250	
	방 호 벽 (콘크리트)	"	116,812	
	가 드 레 일 (L=4m)	"	81,779	
	SA볼트를 이용한 방사형 낙석방지망	m ²	125,472	
(6) 위험사면조치비	암반사면 내부에 설치된 AE센서를 이용한 사면계측(시스템 구축)	공	90,278,192	
	암반사면 내부에 설치된 AE센서를 이용한 사면계측(1공추가)	"	12,557,706	
(7) 구조물 보강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채사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T=1.2mm, B=50mm)	m	138,531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채사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T=1.4mm, B=50mm)	"	147,303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채사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T=1.2mm,	"	193,213	

공종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8) 사면보강	B=100mm)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사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T=1.4mm, B=100mm)	"	207,247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사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T=2.4mm, B=100mm)	"	269,531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사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T=5.0mm, B=100mm)	"	353,481	
	클러치세트(WT)를 이용한 네일링 공법 (토사천공)	m	130,637	신기술
	(리핑암천공)	"	108,298	신기술
	(연암천공)	"	121,749	신기술
라. 하천제방				
(1) 하천제방축조	국가하천(축제+블럭)	m	2,676,458	
	(축제+블럭+돌망태)	"	2,855,768	
	(축제+블럭+사석)	"	3,657,551	
	지방1급하천(축제+블럭)	"	2,077,694	
	(축제+블럭+돌망태)	"	2,257,004	
	(축제+블럭+사석)	"	3,058,787	
	지방2급하천(축제+블럭)	"	1,157,018	
	(축제+블럭+돌망태)	"	1,336,328	
	(축제+블럭+사석)	"	1,874,609	
	(2) 하천제방보강	교반날개 부착형 분사방식 차수보강용 심 층교반고화처리	m ²	134,953
교반날개 부착형 프렌트 및 파일드라이브 설치해체		식	12,923,046	신기술
마. 하천시설물				
(1) 토공 및 호안공	성 토	m ³	13,000	
	돌망태(8-95cm×45)	m ²	47,081	
	호안블럭(40×25×12)	"	46,427	
	돌붙임(공장35cm)	"	118,804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 고
(2) 구조물공	(공장45cm)	m ²	136,987	신기술
	상하철망 고정볼트 스톤매트리스(일반형)	m ²	74,354	
	사 석	m ³	114,184	
	배수문 - 구 체(1.5 ×1.5m)	m	1,204,541	
	문 비 - 편책형(")	개소	33,969,289	
	문 비 - 완전자동형(")	"	13,468,800	
	날개벽 (")	"	3,635,393	
	배수문 - 구 체(1.8 ×1.8m)	m	1,442,738	
	문 비 - 편책형(")	개소	41,734,362	
	문 비 - 완전자동형(")	"	15,995,925	
	날개벽 (1.8 ×1.8m)	"	4,591,370	
	배수문 - 구 체(2.0 ×2.0m)	m	1,682,046	
	문 비 - 편책형(")	개소	46,645,847	
	문 비 - 완전자동형(")	"	17,572,000	
	날개벽 (")	"	5,389,187	
	배수문 - 구 체(2.0 ×2.0m) ×2런	m	2,846,860	
	문 비 - 편책형(")	개소	91,911,699	
	날개벽 (")	"	6,055,452	
	배수문 - 구 체(2.5 ×2.5m)	m	2,223,622	
	문 비 - 편책형(")	개소	62,676,355	
	문 비 - 완전자동형(")	"	31,153,500	
	날개벽 (")	"	8,824,150	
	배수문 - 구 체(2.5 ×2.5m) ×2런	m	4,190,700	
문 비 - 편책형(")	개소	121,972,719		
날개벽 (")	"	9,872,434		
배수문 - 구 체(2.5 ×2.5m) ×3런	m	5,921,614		
문 비 - 편책형(")	개소	181,958,080		
날개벽 (")	"	10,904,778		
배수문 - 구 체(3.0 ×3.0m)	m	3,128,746		
문 비 - 편책형(3.0 ×3.0m)	개소	67,117,97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3) 간이배수펌프시설	문 비 - 완전자동형(")	"	37,518,750	
	날개벽 (")	"	12,176,524	
	배수문 - 구 체(3.0 ×3.0m) ×2런	m	5,319,115	
	문 비 - 편책형(")	개소	130,855,948	
	날개벽 (")	"	13,503,419	
	배수문 - 구 체(3.0 ×3.0m) ×3런	m	7,286,754	
	문 비 - 편책형(")	개소	195,282,922	
	날개벽 (")	"	14,886,636	
	권양대 : (2 ×2)m ×2런, H=6m기준	식	17,239,042	
	펌프일체형 수문 Ø500 - 구체 1.5×1.5, 28톤/분	"	305,989,125	
	" Ø600 - 구체 1.5×1.5, 36톤/분	"	319,654,575	
	" Ø700 - 구체 1.8×1.8, 50톤/분	"	351,108,225	
	" Ø800 - 구체 2.0×2.0, 70톤/분	"	425,505,750	
	" Ø900 - 구체 2.5×2.5, 90톤/분	"	458,884,500	
	" Ø1000 - 구체 2.5×2.5, 115톤/분	"	519,015,125	
	" Ø1200 - 구체 3.0×3.0, 150톤/분	"	635,259,425	
	저수위 운전 펌프수문(D1000 × 130톤/분)	"	377,485,148	신기술
	(D1350 × 220톤/분)	"	498,561,774	신기술
바. 상하수도시설				
(1) 상수도시설				
펌프모터 : 20HP(양정 30~40m기준)	대	2,263,000		
30HP	"	5,500,000		
40HP	"	6,600,000		
50HP	"	7,700,000		
75HP	"	11,000,000		
100HP	"	13,200,000		
150HP	"	20,180,000		
200HP	"	27,377,000		
250HP	"	33,051,000		
송배수관 : 300mm - 강관 (토사구간)	m	156,00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350mm	"	152,000	
	400mm	"	181,000	
	450mm	"	200,000	
	500mm	"	227,000	
	600mm	"	274,000	
	700mm	"	332,000	
	800mm	"	407,000	
	900mm	"	467,000	
	1,000mm	"	546,000	
	1,100mm	"	590,000	
	1,200mm	"	751,000	
	1,350mm	"	845,000	
	1,500mm	"	997,000	
	1,650mm	"	1,134,000	
	1,800mm	"	1,249,000	
	2,000mm	"	1,484,000	
	2,200mm	"	1,690,000	
	2,400mm	"	1,941,000	
	100mm - 주철관	"	58,000	
	150mm	"	77,000	
	200mm	"	91,000	
	250mm	"	109,000	
	300mm	"	127,000	
	350mm	"	146,000	
	400mm	"	184,000	
	450mm	"	209,000	
	500mm	"	234,000	
	600mm	"	270,000	
	700mm	m	323,000	
	800mm	"	387,00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2) 하수도시설	900mm	"	455,000	
	1,000mm	"	529,000	
	75mm - PE관	"	6,100	
	100mm	"	10,000	
	150mm	"	21,000	
	200mm	"	35,000	
	250mm	"	48,000	
	300mm	"	69,000	
	350mm	"	85,000	
	400mm	"	94,000	
	측구(L 형, B=50cm)	"	33,000	
	(U 형, B=45cm)	"	101,000	
	(LU형, B=45cm)	"	120,000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m	301,000	
	(D=300mm)	"	335,000	
	(D=350mm)	"	344,000	
	(D=400mm)	"	352,000	
	(D=450mm)	"	383,000	
	(D=500mm)	"	459,000	
	(D=600mm)	"	553,000	
	(D=700mm)	"	677,000	
	(D=800mm)	"	810,000	
	(D=900mm)	"	912,000	
	(D=1000mm)	"	1,094,000	
	(D=1100mm)	"	1,203,000	
	(D=1200mm)	"	1,426,000	
	(D=1350mm)	"	1,752,000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m	460,000	
	(D=300mm)	"	488,000	
	(D=350mm)	"	507,00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 고
	(D=400mm)	"	530,000	
	(D=450mm)	"	559,000	
	(D=500mm)	"	657,000	
	(D=600mm)	"	762,000	
	(D=700mm)	"	899,000	
	(D=800mm)	"	1,045,000	
	(D=900mm)	"	1,159,000	
	(D=1000mm)	"	1,342,000	
	(D=1100mm)	"	1,475,000	
	(D=1200mm)	"	1,711,000	
	(D=1350mm)	"	2,055,000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m	483,000	
	(D=300mm)	"	512,000	
	(D=350mm)	"	533,000	
	(D=400mm)	"	556,000	
	(D=450mm)	"	583,000	
	(D=500mm)	"	704,000	
	(D=600mm)	"	813,000	
	(D=700mm)	"	953,000	
	(D=800mm)	"	1,097,000	
	(D=900mm)	"	1,219,000	
	(D=1000mm)	"	1,376,000	
	(D=1100mm)	"	1,540,000	
	(D=1200mm)	"	1,769,000	
	(D=1350mm)	"	2,128,000	
	강 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m	340,000	
	(D=300mm)	"	390,000	
	(D=350mm)	"	442,000	
	(D=400mm)	"	510,000	
	(D=450mm)	"	573,00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D=500mm)	"	637,000	
	(D=600mm)	"	764,000	
	(D=700mm)	"	924,000	
	(D=800mm)	"	1,120,000	
	(D=900mm)	"	1,365,000	
	(D=1000mm)	"	1,599,000	
	(D=1100mm)	"	1,827,000	
	(D=1200mm)	"	2,087,000	
강	관(D=250mm) - 토피 2m 기준 아스팔트	m	484,000	
	(D=300mm)	"	539,000	
	(D=350mm)	"	596,000	
	(D=400mm)	"	672,000	
	(D=450mm)	"	739,000	
	(D=500mm)	"	809,000	
	(D=600mm)	"	947,000	
	(D=700mm)	"	1,119,000	
	(D=800mm)	"	1,326,000	
	(D=900mm)	"	1,583,000	
	(D=1000mm)	"	1,827,000	
	(D=1100mm)	"	2,068,000	
	(D=1200mm)	"	2,340,000	
강	관(D=250mm) - 토피 2m 기준 콘크리트	m	505,000	
	(D=300mm)	"	561,000	
	(D=350mm)	"	618,000	
	(D=400mm)	"	696,000	
	(D=450mm)	"	764,000	
	(D=500mm)	"	834,000	
	(D=600mm)	"	975,000	
	(D=700mm)	"	1,147,000	
	(D=800mm)	"	1,357,00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D=900mm)	"	1,614,000	
	(D=1000mm)	"	1,860,000	
	(D=1100mm)	"	2,103,000	
	(D=1200mm)	"	2,376,000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m	273,000	
	(D=300mm)	"	308,000	
	(D=350mm)	"	351,000	
	(D=400mm)	"	428,000	
	(D=450mm)	"	479,000	
	(D=500mm)	"	577,000	
	(D=600mm)	"	693,000	
	(D=700mm)	"	810,000	
	(D=800mm)	"	993,000	
	(D=900mm)	"	1,153,000	
	(D=1000mm)	"	1,393,000	
	(D=1200mm)	"	1,788,000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m	440,000	
	(D=300mm)	"	481,000	
	(D=350mm)	"	530,000	
	(D=400mm)	"	613,000	
	(D=450mm)	"	670,000	
	(D=500mm)	"	774,000	
	(D=600mm)	"	903,000	
	(D=700mm)	"	1,032,000	
	(D=800mm)	"	1,227,000	
	(D=900mm)	"	1,400,000	
	(D=1000mm)	"	1,653,000	
	(D=1200mm)	"	2,073,000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m	471,000	
	(D=300mm)	"	517,000	

공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D=350mm)	"	573,000	
	(D=400mm)	"	646,000	
	(D=450mm)	"	708,000	
	(D=500mm)	"	808,000	
	(D=600mm)	"	943,000	
	(D=700mm)	"	1,066,000	
	(D=800mm)	"	1,267,000	
	(D=900mm)	"	1,456,000	
	(D=1000mm)	"	1,715,000	
	(D=1200mm)	"	2,141,000	
	맨홀(H=2.0m, D=1.2m)	개소	936,000	
	(H=2.0m, D=1.5m)	"	1,352,000	
(3) 우수저류조	세라믹 코팅 리브강판을 이용한 우수저류조 제조 (3,000ton-펌프제외)	ton	372,175	
	샌드위치 Hafj PC WALL 구조 빗물저류조 (8,500ton-펌프제외)	"	286,591	신기술
	PE블럭 모듈형 빗물저류조(4,500ton-펌프제외)	"	384,299	신기술
	과형강관을 이용한 우수저류조(2,200ton- 펌프제외)	"	398,833	신기술
	허니컴셀 노면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m ²	111,312	신기술
사. 국립공원시설				
	국립공원 탐방로(B=1.5m)	km	351,037,000	
아. 농업시설(수리)				
(1) 저수지	성 토	m ³	13,800	
	중심점토	"	13,808	
	돌 붙 임(메붙임)	m ²	110,238	
(2) 용배수로	토공수로	m ³	24,994	
(3) 방조제	성 토	m ³	26,807	
(4) 구조물공	개 거(0.5×0.5m)	m	310,830	
	(0.6×0.6m)	"	376,192	
	(0.8×0.8m)	"	463,597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1.0×1.0m)	"	559,711	
	유 공 관(D= 600mm)	"	877,570	
	(D= 800mm)	"	1,055,903	
	(D= 900mm)	"	1,193,465	
	(D=1,000mm)	"	1,347,316	
- 배수갑문	구체 L=20m(1.5×1.5m)-날개벽포함	개소	66,160,141	
	(1.8×1.8m)- "	"	94,574,718	
	(2.1×2.1m)- "	"	129,443,295	
	자동문비(1.5×1.5m)	"	3,236,525	
	(1.8×1.8m)	"	3,892,336	
	(2.1×2.1m)	"	4,494,640	
	비상문비(1.5×1.5m)	"	10,031,991	
	(1.8×1.8m)	"	14,001,158	
	(2.1×2.1m)	"	15,983,683	
- 취입보	언 체(H=0.8m)	m	3,599,233	
	(H=1.0m)	"	3,609,469	
	(H=1.5m)	"	4,942,107	
	취입수문(0.6×0.6m) - 문비포함	개소	5,605,404	
자. 항만어항시설				
(1) 사석운반투하	0.015~0.03m³급(육상수상)	m³	41,870	
	0.015~0.03m³급(육상수중)	"	56,200	
	0.015~0.02m³급(해상수상)	"	60,600	
	0.015~0.03m³급(해상수중)	"	57,300	
	0.2~0.5m³급(육상수상)	"	51,780	
	0.2~0.5m³급(육상수중)	"	66,120	
	0.2~0.5m³급(해상수상)	"	85,950	
	0.2~0.5m³급(해상수중)	"	99,190	
	0.6~1.0m³급(육상수상)	"	52,890	
	0.6~1.0m³급(육상수중)	m³	68,320	
	0.6~1.0m³급(해상수상)	"	90,37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2) 피복석고르기	0.6~1.0m³급(육상수중)	"	101,380	
	0.2~1.0m³급(육상수상)	m²	46,280	
	0.2~0.5m³급(육상수중)	"	117,920	
	0.2~0.5m³급(해상수중)	"	131,140	
	0.6~1.0m³급(육상수중)	"	137,760	
(3) 속고르기	0.6~1.0m³급(해상수중)	"	196,170	
	0.015~0.03m³급(수상)	"	19,830	
	0.015~0.03m³급(수중)	"	57,300	
	0.2~1.0m³급(수상)	"	42,980	
	0.2~0.5m³급(육상수중)	"	105,800	
(4) T.T.P	0.2~0.5m³급(해상수중)	"	116,810	
	0.6~1.0m³급(육상수중)	"	121,230	
	0.6~1.0m³급(해상수중)	"	174,130	
	제작운반거치 (4 톤급) - 수상	개	430,930	
	" (5 톤급) - "	"	522,400	
	" (6.3 톤급) - "	"	651,350	
	" (8 톤급) - "	"	775,890	
	" (10 톤급) - "	"	946,730	
	" (12.5톤급) - "	"	1,168,260	
	" (16 톤급) - "	"	1,399,710	
	" (20 톤급) - "	"	1,693,970	
	" (25 톤급) - "	"	2,058,780	
	" (32 톤급) - "	"	2,499,630	
	" (40 톤급) - "	"	3,073,850	
	" (50 톤급) - "	"	3,670,100	
	" (64 톤급) - "	"	4,551,810	
	제작운반거치 (4 톤급) - 수중	개	584,120	
" (5 톤급) - "	"	691,030		
" (6.3 톤급) - "	"	848,640		
" (8 톤급) - "	"	969,88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 (10 톤급) - "	"	1,212,350	
	" (12.5톤급) - "	"	1,542,980	
	" (16 톤급) - "	"	1,774,440	
	" (20 톤급) - "	"	2,072,010	
	" (25 톤급) - "	"	2,467,670	
	" (32 톤급) - "	"	2,927,260	
	" (40 톤급) - "	"	3,536,740	
	" (50 톤급) - "	"	4,166,060	
	" (64 톤급) - "	"	5,133,730	
	제작은반까지(63톤급) - 수중 - 미답방향 평탄 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홀이 설치된 테트라포드	"	848,640	
	" (8 톤급) - "	"	969,880	
	" (10 톤급) - "	"	1,212,350	
	" (12.5톤급) - "	"	1,542,980	
	" (16 톤급) - "	"	1,774,440	
	" (20 톤급) - "	"	2,072,010	
	" (25 톤급) - "	"	2,467,670	
	" (32 톤급) - "	"	2,927,260	
	" (40 톤급) - "	"	3,536,740	
차. 학교시설				
(1) 담 장	벽돌담장	m ²	250,400	
	블럭담장	"	226,200	
	철망웬스	"	122,000	
카. 산림시설				
	산 사 태	ha	105,884,000	
	야계사방	km	297,167,000	
	사 방 댐(B=50m,H=8.3m)	개소	361,601,000	
	임 도(B=4m)	km	203,021,200	
	자연휴양림시설물 - 숲속의집	m ²	1,512,000	
	- 화 장 실	"	1,026,000	

공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타. 철도시설	수목원시설 - 묘포장	m ²	5,000	
	- 유리온실	"	80,000	
	- 초 본 원	"	133	
	- 교관목원	"	1,200	
	- 생태관찰로	km	125,499,000	
	- 휴게실	m ²	1,512,000	
	- 화장실	"	1,026,000	
	가로수(활엽류양분 무 흉고직경8cm) - 14m ² 만적용	본	230,673	
	가로수(활엽류양분 무 흉고직경15cm) - 15m ² 이상적용	"	736,937	
	가로수(침엽류소 무 흉고직경8cm) - 14m ² 만적용	"	277,673	
	가로수(침엽류소 무 흉고직경15cm) - 15m ² 이상적용	"	645,937	
	케도유실(단선)	m	499,320	
	독 유 실	m ³	133,300	
	노반침하	"	65,490	
각기비탈붕괴(토사) (암석)	"	71,330 143,840		
케도매몰(단선)	"	84,190		
도상유실	"	307,540		
교대, 교각도괴(H=8m, B=12m)(단선)	기	89,104,010		
교대 및 교각도괴(복선) (H=11.0m)	"	264,078,750		
파. 소규모시설				
(1) 농로	토공	m ³	8,790	
	콘크리트포장(T=20cm)	a	4,453,670	
(2) 소교량	상부(Slab) : B=3m, H=3m	m	2,151,710	
	H=5m	"	2,314,820	
	B=4m, H=3m	"	2,700,100	
	상부(Slab) : B=4m, H=5m	"	2,924,390	
	B=5m, H=3m	"	3,095,020	
	H=5m	"	3,542,540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B=6m, H=3m	"	3,875,220	
	H=5m	"	4,166,060	
	하부(교대) : B=3m, H=3m	기	3,660,590	
	H=5m	"	4,840,010	
	B=4m, H=3m	"	4,844,300	
	H=5m	"	6,427,240	
	B=5m, H=3m	"	6,055,920	
	H=5m	"	7,973,690	
	B=6m, H=3m	"	7,140,890	
	H=5m	"	9,574,860	
	하부(교각) : B=3m, H=3m	기	2,031,510	
	H=5m	"	3,158,350	
	B=4m, H=3m	"	3,023,120	
	H=5m	"	4,409,670	
	B=5m, H=3m	"	3,758,250	
	H=5m	"	5,479,620	
	B=6m, H=3m	"	4,448,300	
	H=5m	"	6,548,500	
	세 월 교 : B=5m, Φ 600mm	m	1,187,990	
	Φ 800mm	"	1,690,240	
	Φ1,000mm	"	2,070,150	
하. 소하천				
(1)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	m	1,052,500	
(2) 기존구조물철거	석축철거(찰쌓기)/기계깨기 및 집토	m ²	10,881	
	석축철거(메쌓기)/기계깨기 및 집토	m ²	8,350	
	호안블럭 철거	m ²	7,010	
	돌망태 철거	m ²	6,520	
(3) 토목용섬유부설	필터매트부설/하천호안용(350g/m ²)	m ²	2,220	
	필터매트부설/하천호안용(500g/m ²)	m ²	3,650	
(4) 비탈면보호공	씨앗뿌어붙이기(Seed spray)/성토면	m ²	2,180	

공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5) 호안시공	거적덮기	m ²	2,730		
	블록붙임/장방형(400×250×120mm)	m ²	35,390		
	블록붙임/환경블록(400×400×120mm)	m ²	28,980		
	식생블록 쌓기	m ²	60,730		
	식생매트 붙임	m ²	16,280		
	자연석 쌓기(300×400×500)	m ²	119,690		
	" (500×700×800)	"	140,130		
거. 군 시 설					
(1) 병영건물	통합막사(철근콘크리트조, 3,300m ²)	m ²	1,375,000		
	(" , 1,650m ²)	"	1,532,000		
	(" , 660m ²)	"	1,689,000		
	취사식당(철근콘크리트조, 363m ²)	"	1,653,000		
	목 욕 탕(철근콘크리트조, 165m ²)	"	2,500,000		
	창 고(철근콘크리트조, 297m ²)	"	1,135,000		
	체 욕 관(철근콘크리트조, 165m ²)	"	1,394,000		
	화 장 실(조적 스타브조, 24m ²)	"	1,397,810		
	(2) 기타시설	탄 약 고(이그루대형, 208m ²)	"	1,543,000	
		(소 형, 50m ²)	"	1,111,000	
		무 기 고(반지하형, 66m ²)	"	1,021,469	
		정 비 고(철근콘크리트조-차량, 119m ²)	"	1,467,000	
		검 문 소(철근콘크리트조, 66m ²)	"	1,041,780	
		위병맞면회시설(철근콘크리트조, 100m ²)	"	1,100,324	
고가초소(철근콘크리트조, 12m ²)		"	940,223		
울 타 리(블록담장, 6"×13단)		m	182,780		
(철책울타리 Y형, 3.3×3m)		"	229,380		
(쇠고리철조망, 2.65×3m)		"	134,996		
(철조망, 2.65×3m)	"	43,003			
심 정(150m, 100톤/일)	개소	123,352,000			
너. 문화재시설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 부식재교체, 단청)	m ²	9,871,948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고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5,133,411	
	" (산자이상 해체보수)	"	3,012,775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	5,558,699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4,275,927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667,609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	3,463,832	
	" (도리이상 해체보수)	"	1,731,911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388,522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	11,388,598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	7,344,543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	3,841,785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	8,025,853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	6,483,365	
	전시관(절충식기와)	"	6,862,487	
	일각문, 협문	"	8,205,127	
	사주문	"	4,459,303	
	초가집	"	2,537,471	
(3) 기타시설				
-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m ²	325,660	
	" (장대석시공)	"	1,378,200	
	보수(막돌 시공)	"	253,722	
	" (장대석시공)	"	964,738	
-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772,899	
	" (사고석담장)	"	4,016,460	
	" (토 담)	"	573,775	
	" (돌 담)	"	579,512	
	보수(막돌 담장)	"	541,026	
	" (사고석담장)	"	2,811,518	
	" (토 담)	"	516,395	
	" (돌 담)	"	405,659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복구단가(원)	비 고
- 배수로	신설(자 연 석)	"	344,263	
	" (장 대 석)	"	1,170,506	
	" (흙관 매설)	"	170,984	
	보수(자 연 석)	"	240,984	
	" (장 대 석)	"	585,247	
	" (흙관 보수)	"	119,686	
- 성곽	재축(완전인멸부분,H=4.1,B=5.3m)	"	8,100,431	
	보수(성석보충해체보수,H=4.1,B=5.3m)	"	3,993,506	
- 석축	신설(자연석, h=2m)	"	839,154	
	보수(자연석, h=2m)	"	441,471	

VII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VII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정 2004. 7. 22. 소방방재청훈령 제 32호
개정 2006. 3. 10. 소방방재청훈령 제 85호
개정 2007. 6. 14. 소방방재청훈령 제117호
개정 2008. 5. 28. 소방방재청훈령 제150호
개정 2010. 6. 21. 소방방재청훈령 제204호
개정 2011. 3. 3. 소방방재청훈령 제236호
개정 2013. 7. 18. 소방방재청훈령 제33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조사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성) ① 자연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중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
- ② 중앙조사단의 단장(이하 “중앙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③ 중앙조사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중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중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인원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⑤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합동조사단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수 있다.
- ⑥ 중앙합동조사단 편성 시 조사단원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우선 선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2조의2(민간전문가의 자격)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4.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6.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동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중앙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구별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등 사례수집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계획(안)의 작성

제4조(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등) ① 영 제7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조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합동조사단(이하 “지방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한다.

② 지방조사단의 편성은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조사단의 단장은 영 제73조에 따른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조사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중앙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앙조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집계 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피해상황총괄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해대장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피해복구계획(안)과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내역

④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조사요령 등의 작성 및 통보)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피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조사요령과 복구물량 산출기준 등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통보한 피해조사요령 등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조사단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별로 기본현황 및 점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조사기간) ① 중앙조사단의 조사시기, 조사기간 등은 피해의 규모와 현지여건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재난상황의 수시보고 후 즉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로 재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조사단은 공공시설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의 최종보고 후 7일 이내에,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최종보고 기일내(재난발생원인종료 후 10일 이내) 영 제7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피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대장)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시설별·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별로 작성·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괄현황

- 가. 피해일시·지역 및 강우(강설)량
- 나. 피해원인·피해물량·피해액
- 다. 응급조치내역, 피해상황 사진 및 도면
- 라.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피해·복구내역

- 가. 공종별 물량 및 소요금액산출내역 등 복구계획
- 나. 시설구분, 시설등급, 시설명, 복구유형, 과거피해현황

3. 사진대지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해대장은 NDMS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유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는 종이대장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에의 보고) 중앙조사단장은 제3조에서 정한 재해피해지역 현지조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개요
2. 피해상황
3. 재해현황
4. 재해복구 소요예산(안)
5. 개선복구대상사업 우선순위조서
6. 피해지역 위치도(축척 1/5,000 이상)
7. 재해대장
8. 피해 사진첩
9. 수해복구계획 사례 수집내용(별지 제4-1호 서식)
10. 개선복구계획서(별지 제4-2호 서식)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당해 복구비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예산확보 계획서」(별지 4-3호 서식)
12.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촬영비, 위성사진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요구) ① 소방방재청장은 영제7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피해조사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 5. 2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피해상황총괄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역명 :

년 월 일 시현재

구분		지역	단위				
		총이재민	세대/명				
인명	사망	명					
	실종	명					
	부상	명					
	계	명					
침수	농경지	ha					
	도시	ha					
	계	ha					
건물	주건물	유실·전파	동				
		반파	동				
	부속물	침수	동				
		계	동				
	피해액	천원					
선박	동력	전파	척/톤				
		반파	척/톤				
	무동력	전파	척/톤				
		반파	척/톤				
	계	척/톤					
	피해액	천원					
농경지	전(유실,매물)	ha					
	답(유실,매물)	ha					
	계	ha					
	피해액	천원					
농작물	전작	ha					
	답작	ha					
	기타	ha					
	계	ha					
공공시설	도로	도로	개소/m				
		교량	개소/m				
		피해액	천원				
	하천	하천	개소/m				
		피해액	천원				
		소하천	개소/m				
	피해액	천원					

공 공 시 설	수 도	상.하수도	개소						
		피 해 액	천원						
	항 만	항만시설	개소						
		피 해 액	천원						
	어 항	어항시설	개소						
		피 해 액	천원						
	학 교	교 실	동						
		피 해 액	천원						
	철 도	철 도	개소/m						
		피 해 액	천원						
	수 리	수리시설	개소						
		방 조 제	개소						
		피 해 액	천원						
	사 방	사 방	개소/ha						
		임 도	개소/m						
		피 해 액	천원						
		군 시 설	개소						
		피 해 액	천원						
		소 규 모	개소						
		피 해 액	천원						
기 타	기 타	개소							
	피 해 액	천원							
	피해액 소계	천원							
사 유 시 설	축대·담장	개소/ 천원							
	가 축	두/천원							
	축사·잡사	개소/천원							
	수산증양식	개소/천원							
	어망·어구	통/천원							
	비닐하우스	ha/천원							
	기타사유시설	개소/천원							
	피해액 소계	천원							
	총 피 해 액	천원							

용지 규격 : 210mg×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재 해 대 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피해사진” (7.5cm×12.5cm)	시설구분/시설등급	/
	시설명	
	강우(강설)량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mm, cm)
	피해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원인	
“위치도”	응급조치 현황	
	피 해 액	천원
	복 구 비	천원
	복구유형	기능복원, 개선복구
	복구효과	
	과거 피해현황	

용지 규격 : 275mm×364mm[켄트지 120g/m²(재활용품)], B4 황으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2×××. . . ~ . . . 기간중 ○○피해복구계획

☞(2×××) 추가지원율 : 0.00
<00억미만 시군구>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단 위	피해현황		복 구 계 획							
				합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피해물량	피해액	물 량	총복구액	물 량	복구액	국 고	지방비	물 량	금 액
합 계			0		0		0	0	0		0
국고 추가지원								0	0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0	0		
소 계			0		0		0	0	0		0
[소방방재청]			0		0		0	0	0		0
· 재난지원금	세 대	0	0	0	0	0	0	0	0	0	0
· 공공 건물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도시방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소화전	개 소/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수위·우량관측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소규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소 교 량	"	0	0	0	0	0	0	0	0	0	0
- 농 로	"	0	0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농림축산식품부]			0		0		0	0	0		0
· 농경지매입	개 소/h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수리 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농촌공사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방 조 제	개 소/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해양수산부]			0		0		0	0	0		0
· 항만 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국가이양시설	"	0	0	0	0	0	0	0	0	0	0
· 어항 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소규모어항	"	0	0	0	0	0	0	0	0	0	0
- 국가이양시설	"	0	0	0	0	0	0	0	0	0	0
· 양식양어장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용지 규격 :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선박	척/본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가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지방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어업무선국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등대·해운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수산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해양쓰레기	개소/본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산 립 형]			0		0		0		0		0
·산사태	개소/ha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 유 립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지자체소유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사 유 립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임도	개소/ha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 유 립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지자체소유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사 유 립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계류보전	개소/ha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 유 립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지자체소유림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사 유 립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사방댐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 유 립	"	0	0	0	0	0	0	0	0	0	0
- 지자체소유림	"	0	0	0	0	0	0	0	0	0	0
- 사 유 립	"	0	0	0	0	0	0	0	0	0	0
·산림휴양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수목원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가로수	개소/본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국토교통부]			0		0		0		0		0
·마을기반조성	개 소	0	0	0	0	0	0	0	0	0	0
·교량(국도)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도로(국도)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하 천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가하천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지방하천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광역상수도	개 소	0	0	0	0	0	0	0	0	0	0
·철도시설	개소/m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가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 지방관리	"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도시개발시설	"	0	0	0	0	0	0	0	0	0	0
·수위·우량관측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기 타	"	0	0	0	0	0	0	0	0	0	0

[안전행정부]			0	0	0	0	0	0	0	0
· 교량	개소/m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지방도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시도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군도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국가이양시설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도로	개소/m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지방도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시도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군도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국가이양시설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농어촌도로	개소/m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도로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교량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기타	개소/m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보건복지부]			0	0	0	0	0	0	0	0
· 공원묘지	개소	0	0	0	0	0	0	0	0	0
· 화장장	개소	0	0	0	0	0	0	0	0	0
· 기타	개소	0	0	0	0	0	0	0	0	0
[경찰청]			0	0	0	0	0	0	0	0
· 경찰시설	개소	0	0	0	0	0	0	0	0	0
[해양경찰청]			0	0	0	0	0	0	0	0
· 해양경찰시설	개소	0	0	0	0	0	0	0	0	0
[교육부]			0	0	0	0	0	0	0	0
· 학교시설	개소	0	0	0	0	0	0	0	0	0
- 국립	"	0	0	0	0	0	0	0	0	0
- 공립	"	0	0	0	0	0	0	0	0	0
- 사립	"	0	0	0	0	0	0	0	0	0
· 기타	개소	0	0	0	0	0	0	0	0	0
[국방부]			0	0	0	0	0	0	0	0
· 군사시설	개소	0	0	0	0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0	0	0	0	0	0	0	0
· 국민관광지	개소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 체육시설	개소	0	0	0	0	0	0	0	0	0
· 기타	개소	0	0	0	0	0	0	0	0	0
[문화재청]			0	0	0	0	0	0	0	0
· 문화재시설	개소	0	0	0	0	0	0	0	0	0
- 국가지정	"	0	0	0	0	0	0	0	0	0
- 국가(위탁)	"	0	0	0	0	0	0	0	0	0
- 지방지정	"	0	0	0	0	0	0	0	0	0
[산업통상자원부]			0	0	0	0	0	0	0	0
· 기타	개소	0	0	0	0	0	0	0	0	0
[미래창조과학부]			0	0	0	0	0	0	0	0
· 정보통신시설	개소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 기타	개소	0	0	0	0	0	0	0	0	0
[환경부]			0	0	0	0	0	0	0	0
·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소/㎡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국가관리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지방관리	"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폐기물처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상수도	개 소	0	0	0	0	0	0	0	0	0	0
하수도	개 소	0	0	0	0	0	0	0	0	0	0
오수분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육상쓰레기	개소/톤	0 / 0	0	0 / 0	0	0 / 0	0	0	0	0 / 0	0
공 원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 립	'	0	0	0	0	0	0	0	0	0	0
- 시 · 도립	'	0	0	0	0	0	0	0	0	0	0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0	0
[중소기업청]											
공설시장(지방관리)	개 소	0	0	0	0	0	0	0	0	0	0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기타	개 소	0	0	0	0	0	0	0	0	0	0

용지 규격 :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중앙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지역

○ 지원복구(우심지역) :

○ 자력복구(비우심지역) :

다. 조사기간

라. 조사단 편성

구 분	조사단장	조사단원	비 고
계 중앙합동조사단 지방합동조사단			

마. 조사결과 총평

210mg×297mm[백상지 80g/m²]

2. 피해원인 분석

가. 기상상황

나. 피해원인 분석

○ 종합분석

○ 시설별 피해원인분석

구 분		피해규모	피해원인분석
사 유 시 설	· 인명	명	
	· 주택	동	
	· 농경지	ha	
	· 농림시설	동	
	· 수산증·양식		
	· 기타		
공 공 시 설	· 도로·교량	개소	
	· 하천	"	
	· 소하천	"	
	· 수리시설	"	
	· 사방·임도	"	
	· 소규모 시설	"	
	· 기타공공	"	

※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규모에 따라 시설별로 선정 작성

210mg×297mm[백상지 80g/m²]

3. 재해현황 : 시·도별, 시·군·구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 설 명	단위	지자체보고		중앙조사단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사 유 시 설								
공 공 시 설								

※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도 물량 및 피해금액 모두 작성

210mg×297mm[백상지 80g/m²]

4. 재해복구소요예산(안) : 시·도별, 시·군·구별, 자원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 설 명	단위	지자체 복구계획		중앙조사단 복구계획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은 물량은 세분화 하되 금액은 재난지원금 일괄 기입

210mg×297mm[백상지 80g/m²]

(재원별)

(단위 : 백만원)

부·처별	복 구 소요액	지 원 복 구		차력복구
		국 비	지방비	
계				

210mg×297mm[백상지 80g/m²]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4-1호서식]

복구계획 수립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개요

- 위 치 :
- 시 설 명 :
- 피해내역 :

○○시군구 복구계획

- 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수립 기준 작성
- 사 업 량 :
- 복 구 비
- 복구계획 단면도

--

210mg×297mm[백상지 80g/m²]

중앙합동조사 결과

- 중앙합동조사단에서 검토한 사항 기재
- 복구계획
- 복 구 비
- 기 타

복구계획검토 및 조치사항

-
-
- 피해 및 복구계획단면도

기타효과

-
-

기타사항

-
-

210mg×297mm[백상지 80g/㎡]

피해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4-2호서식]

2013. .

○○지구 개선복구계획서

○○○○(시·도)
(시·군·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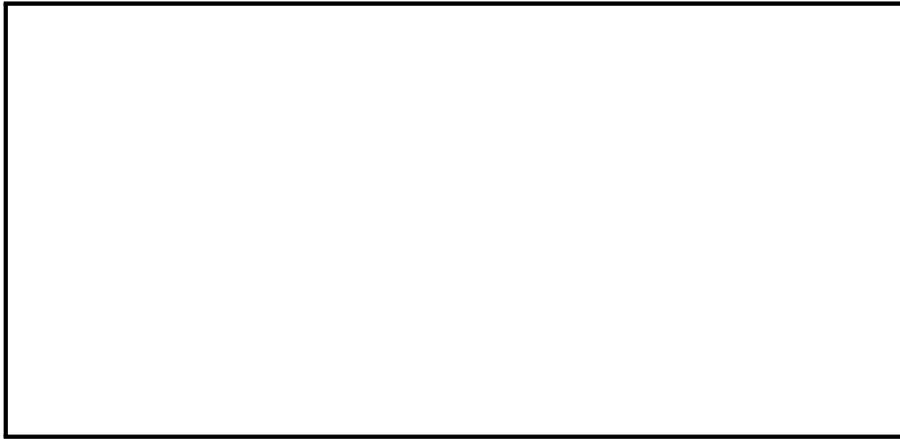
작성자	직·성명
-----	------

210mg×297mm[백상지 80g/m²]

○○지구 개선복구계획서

위치도

축척표시 1/50,000, 1/25,000 등



피해원인

-
-
-

※ 호우기간 :

강우량 : 00mm(최대시우량 00mm)

210mm×297mm[백상지 80g/m²]

피해현황

○ 시설현황

- 시설명 :
- 위치 :
- 시설제원 :
- 시설등급 :
- 기타 :

○ 피해현황(피해액 00,000백만원)

- 주택 침수 및 이재민 00가구 00명 등
- 0,000 백만원
- 0,000 백만원
- 0,000 백만원
- 0,000 백만원

○ 과거 피해현황

발생일시	피해개요	피해규모	피해원인	복구내용	비고

개선복구 필요성

-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위험성, 사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
 -
 -
- ※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피해 발생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210mg×297mm[백상지 80g/m²]

복구계획

- 복구방침 :
- 사업량 : L= 00 km, B= 0.0M
-
-
- 사업비 : 00,000백만원

피해 및 복구단면도



산출근거

○ 총 소요액	00,000 백만원
○ 공사비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 보상비	00,000 백만원
○ 설계비	00,000 백만원
○ 감리비	00,000 백만원

《공법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 재난관련 전문가 등의 대상으로 개선복구계획수립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내용 제시

210mg×297mm[백상지 80g/m²]

기대효과

○

○

피해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 제출서류 : 재해대장, 편입토지조서, 편입토지지적도, 신규단가 관련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 80g/㎡]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피해개요

- 피해일시 : 2013. 00. 00. ~ 00. 00
- 피해지역 : ○○시·도 ○○시·군·구
- 피해원인 : 00.00~00.00 집중호우, 제00호 태풍 ○○
- 피해금액 : 000억원(공공시설 000, 사유시설 000)

복구계획

- 복구비 : 000억원(국고 000, 지방비 000) (단위 : 억원)

시·도 및 시·군·구명	복 구 비				비고
	합 계	국 고 (국고추가지원 포함)	지방비		
			시·도	시·군·구	
					※ 지역포함

※ 국도, 철도, 국가항만 등 국가시설은 제외

복구비 확보계획

- 00.00~00.00 집중호우(제00호 태풍○○)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복구비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의 규정에 따라 중앙 및 시·도에서 재해복구계획을 통보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계획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원별	확보재원	확보계획	비 고
국 비	-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시·도, 시·군·구 해당)	별도첨부
시·도비	예비비(억원), 자체이전용(억원), 순세계잉여금(억원), 기타(억원)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시·군·구 해당) ▶ 시·도 예산집행계획	..
시·군·구비	예비비(억원), 자체이전용(억원), 순세계잉여금(억원), 기타(억원)	▶ 예산 지출승인(시·군·구) ▶ 시·군·구 예산집행계획	..

○○ 시·도,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서명)

○○ 시·도, ○○ 시·군·구 예산담당업무 실·국장 ○○○(서명)

○○ 시·도, ○○ 시·군·구 방재업무 담당 국·과장 ○○○(서명)

2013. 00. 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시·도 또는 시·군·구별 각각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2 중앙합동조사단 업무요령

시·도 상황실 도착시

① 시·도 업무담당자 지정 및 확인(조사단장)

- 시도 업무담당자 지정 및 각종 자료 취합 내용 교육
 - 전산입력 담당 : 공공시설 조서입력(NDMS), 복구계획서작성(NDMS)
 - 사유시설 집계, 취합 확인 담당(특히 재난지원금 취합 독려)
 - 보고서 작성용 자료 정리 담당
(사진첩, 수범사례, 강우 분석 및 분포도, 문제점 및 건의사항, 개선복구 설명자료, 차드 등)

② 공공시설 조서입력여부 확인 및 내용 검토(소방방재청)

- 공공시설 조서입력 여부(진행상황)를 확인하여 미입력시 조치강구
- 조서출력표상(필드명“도조사분”) 시설별, 시군별 피해물량, 피해금액 소계가 최종보고된 전산입력 피해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소방방재청)
- 피해액 5천만원이상, 피해액대비 복구비 2배이상, 2개이상 시군구에 걸친 피해 시설별 List를 확인 현장조사 계획수립(조사단장)

③ 피해액 5천만원이하의 공공시설(시·도 위임) 조사상황 확인 및 교육(조사단장)

-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지 피해조사 완료와 동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실시

④ 재난원인분석조사단 활동사항 파악 및 피해원인 청취

- 원인분석 실적 청취후 복구계획수립에 반영
 -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확인
- 원인분석조사단 협조조치
 - ※ 시도 조사분의 조사지연으로 전체 집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현지 확인조사 및 피해·복구액 확정시

- ① 현장 조사시 피해 개소별 현장에서 피해·복구 물량 및 금액을 확정 시군 직원들에게 확인시킴(조사단원)
 -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확인
- ② 재해대상상의 사진에 피해물량을 적서로 Inking하고, 복구공법, 공중, 주변여건 등에 관하여 사진 주위여백에 간단히 메모.
 - ※ 조사단장에게 보고시 참고토록 함
- ③ 당일 현장조사분은 피해·복구 물량 및 금액에 대해 당일 전산입력까지 완료(조사단원)
 -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필드명“중앙조사”)에 피해 및 복구를 적색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지정된 사전 검토자에게 제출
 - 지정된 사전검토자는 전산입력전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전산담당자에게 제출
 - ※ 전산 입력된 자료원부는 입력착오 확인을 위해 작업완료시까지 깨끗하게 보관
 - 입력된 공공시설 조서와 재해대상상의 확정 피해 및 복구와 건수, 입력내용 등의 정확성을 Check(소방방재청 조사단원)
 - ※ 특히 시설구분, 시설등급이 복구계획서내용과 일치 여부 및 시설별 소관부처가 정확하게 구분되었는지 확인
 - ※ 조서 입력시 오탈자 및 표기방법에 주의
- ④ 시도 및 타부처 합동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 미흡시 독려 (소방방재청 조사단원→시도 및 타부처 조사단원)
 - ※ 시도 및 타부처 조사단의 현장조사 지연으로 피해·복구액 집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 ⑤ 하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서를 확인, 시·군간 경계지점 등 상·하류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복구계획 수립
- ⑥ 개선복구계획지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단장에게 보고 후 반영하고 조사단장은 조사결과 보고시 상세 보고
- ⑦ 재난상황관리시 인명피해 관리현황을 토대로 중앙합동조사단 반장이 복구계획 수립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검토한 사항을 확인 후 반영
 -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참고

현장 조사후 집계작성(보고서 작성)시

- ① 현장 조사완료후 시도 상황실에 귀청시 중앙조사단원들에게 담당업무 지정(조사단장)
 - 현장조사후 시도 상황실에 귀청 즉시 중앙조사단원에 대한 담당 업무를 지정하여 시도에서 취합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집계 독려와 보고서 작성(소방방재청 조사단원)
 - ※ 전산입력, 사유시설 취합, 피해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개선복구조서, 기타 보고서용 각종 자료 등
 - 소방방재청 각 업무 담당직원은 시도의 해당실과와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확립하여 문제점 및 자료취합 지연시 대책 강구
 - ※ 특히 재난지원금 등의 취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② 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에 의한 공공시설 조서 내용의 입력여부 및 정확성 등을 최종 확인(소방방재청 조사단원)
 - 소방방재청 조사단원은 해당 시군의 전체 공공시설에 대해(타부처 소관 및 5천만원이하 포함) 입력의 정확성과 입력진행 상황을 최종 확정된 재해대장에 의거 확인
 - ※ 타부처 또는 시·도(5천만원 이하) 조사단원이 최종 피해 및 복구 물량과 금액을 미확정시에는 조속히 확정 토록 독려.
 - 입력오류 및 재해대장상의 건수와 일치여부 확인
 - ※ 조서 입력시 자주 발생하는 입력오류 사례 “별첨 참고”
- ③ 타부처 및 시도 조사단이 조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해대장에 대한 Spot Check(소방방재청 조사단원)
 - 최종 입력된 조서자료에 의해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이 과다한 경우, 개선복구 대상, 피해액 산정이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 ※ 재해대장을 Check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수정 확정 후 적색으로 정정 표기

귀청시 지침들

- 공공시설 조서 출력자료
- 복구계획서
- 피해내역 총괄(확정분)
- 사진첩
- 피해 현황지도
- 미니 차트(개선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대상)
- 총괄보고서
-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11호)

공공시설 조서 입력시 자주 발생하는 착오사례

- 피해공공시설의
 - 소관부처 분류착오⇒예) 농어촌도로의 경우 안전행정부 시설인데 국토교통부로 입력
 - 시설등급 입력착오⇒예) 도로·교량의 경우 국도, 군도 등으로 입력하여야 하는데 군도28호선, 국도42호선, 세포선도로 등으로 잘못 입력
 - ※ 복구 계획서상 시설등급이 없는 것은 입력하지 말 것
 - 시설구분은 반드시 복구 Sheet상의 중분류항목을 그대로 입력
 - 기타⇒특히 부처란의 기타와 소규모시설의 기타를 혼돈하고 있음
 - 예> • 마을회관, 공동빨래터, 마을창고 등 새마을 시설물
⇒소규모시설 기타
 - 기타 현충탑 등의 시설물 ⇒ 소방방재청 기타
 - ※ “기타”란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류할시 소관시설물의 해당 부처를 명확하게 판단 요함.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시 참고사항

① 공공시설 조서의 도조사분 물량 및 금액 검토(시설별, 시군별)

-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등급은 복구계획서작성시 공공시설 조서출력 표상의 시설물 소계물량이 그대로 이기될 수 있도록 명확히 분류 (시설구분 및 등급에 따라 복구비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부처별, 자원별 복구계획 수립에 차질 초래)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개선 복구계획수립요령 숙지
- 피해상황 집계표와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의 피해물량, 금액을 대조·확인하여 수정·보완

② 사유시설 피해조사분의 물량, 금액 피해정도 검토(시설별, 시군별)

- 사유시설의 피해 및 복구는 누락, 착오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물량과 피해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서류검증과 피해대비 복구물량 일치여부를 확인

③ 중앙조사결과 공공시설 조서작업은 반드시 중앙조사단에서 재난대장 확인 후 조사단 요원이 직접 이기 작성 후 전산작업 실시

- 공공시설 조서 작업표상의 물량단위는 복구계획서의 단위와 일치 시킬 것
 - 예> 도로·교량(m), 하천(m), 소규모시설(개소), 소하천(m)
- 공공시설 조서 출력후 피해물량·금액, 복구물량·금액, 지원여부 (지원, 자력)을 원본과 대조후 이상이 없을시 복구계획서 작성
- 복구 Sheet 작업은 초안을 검토,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거 시설별, 규모별로 적정분류가 이루어졌는지 중앙조사단이 반드시 확인 대조
- 개선복구계획보고서와 재해대장을 최종 확인 대조

④ 피해액대비 복구비 2배이상 공공시설은 중앙합동조사단이 재해대장을 지참, 현지확인 후 조서작업표상에 이기 작성

⑤ 재해대장과 공공시설 조서 출력표상의 피해물량 및 복구물량은 반드시 일치

보고서 작성용 각종 자료정리사항

- 소방방재청 조사단 지원담당자 지정 : 1명
- 강우량 : 지역별 연속강우량, 시우량(최대), 일우량(최대), 기상대 강우관측 자료
- 최대 풍향·풍속
- 도 면 : 강우량 분포도(기상일기도 A4용지)
- 군부대 지원현황
- 적십자사와 민간단체등 구호지원내용
- 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동원현황, 응급복구실적)
- 주요피해 사진(5"×7") : 분야별 시사성 있는 것
 - ※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 피해사진을 촬영토록 권고
- 개선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 지구 자료
 - 시·도에서 형식을 통일, B4용지에 일괄적으로 작성
- 개선복구 지구별 미니 차트와 설명자료
- 주요 피해사례(시설물별 피해원인분석)
- 사전 조치사항
- 호우피해로 발생한 민원사항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미담·수범사례
- 반성과 교훈

3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정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의 해석을 위한 용어 해설

○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

【제 외 예 시】

- ◇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조업중 태풍에 의해 침몰한 경우
- ◇ 자연현상에 의한 비행기 사고

○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이므로

-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폭풍해일에 관한 기상 특보발령기준에 미달되거나
-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하여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
- 경계 수위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 가능 유량의 1/2미만인 경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 미만인 때
- 12시간 강우량이 110mm 미만인 때
- 시우량이 30mm 이하인 때
-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미만 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미달된 경우를 말하나 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연재난임이 명약관화 할 때에는 이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본다.

-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피해제외 예시】

-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 등
- ◇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 ◇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 실종된 경우
-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입은 피해
- ◇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
- ◇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 ◇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과실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

○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범위

- 홍수, 호우, 폭설,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현황

【간접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예시】

- ◇ 태풍·벼락 등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 탑승 승차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늘어진 송전선에 감전사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망한 경우의 예시】

- ◇ 산사태로 부상하여 흙더미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작업 중 사망한 경우 → 사망
-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도중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
- ◇ 하천 급류에 실종되었다가 사체가 발견된 경우 → 사망

○ 증거부족 인명피해 처리 결정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로 결정.
단, 피해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증거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연재해 여부 결정

○ 겨울철 대설 피해 기준

《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주택, 온실, 축사 등 구조물에 과재 설하중으로 붕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대설특보 중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매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눈에 미끄러지거나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도로·등산로 등 통제를 하였으나 무리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공서의 위험대피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인명피해 처리 세부지침

- 인명피해 보고 : 발생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
 - 보고계통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 입력 즉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재입력 지시 등 이행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 해당 입력란에 즉시 입력
-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조사 및 통계에 포함하고 복구계획에 포함,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
- 피해발생 시·군·구에서는 사망·실종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조사결과를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역 관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 등으로 통보
-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연재난대책기간 인명피해 운영 관리

○ 최종보고 관리 강화

- 인명피해 보고서가 초동보고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보고하도록 개선
 - 복구계획 수립 시 경찰서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 추가확보 등으로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
 - 자연재해로 부상을 입은 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경우
 -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으나 산재보험 등으로 처리된 경우
 - 초동보고 시 ‘실종자’ 로 보고하였으나 ‘사망’ 이 확인된 경우
- 인명피해 관리현황을 토대로 중앙합동조사단 반장이 복구 계획수립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시·군·구 본부장의 확정사항을 검토 후 반영
단, 자체복구 계획 수립시에는 확정사항을 시·도 본부장의 확인 후 반영

○ 인명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최종결재권자 명확화

- 인명피해 현지조사자는 시·군·구 재난부서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현지조사 보고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최종결재를 득하여 제출할 것

○ 인명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제출 서식 마련

- 초동보고는 재난상황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붙임1)
- 최종보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조사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붙임2)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수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신 : 인
제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상황()	
1. 일시 :	
2. 장소 : 사도 사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장비 :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붙임2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문서번호	○○○○과-	결 재	주무관	○○○○ 담당	○○○○ 과장	부시장 (부군수)	시장 (군수)
보고일시	'00. 00. 00.						
공개여부							

**'00. 00. 00. 호우·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0000. 00. 00.

○○○지역대책본부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1] 사고개요

- 인명피해 : 사망 0명, 실종 0명, 부상* 0명
 - * 부상자 ○○○은 ○○병원 후송 치료 후 00월 00일 퇴원
 - * 부상자 ○○○은 ○○병원 후송 치료 중 00월 00일 사망
- 발생일시 : 0000.00. 00. 00:00분
- 사고장소 : ○○시 ○○읍 ○○리 00번지
- 사고자 인적사항

<사망자>

- 성 명 : ○ ○ ○ (00세) 성 별 :
- 주 소 : ○○시(군) ○○읍(면) ○○리 00번지

<부상자>

- 성 명 : ○ ○ ○ (00세) 성 별 :
- 주 소 : ○○시(군) ○○읍(면) ○○리 00번지

- 사고경위
 - 0000. 00. 00일 00:00경 며느리 ○○○와 식사 후 거동이 불편하신 사망자 홀로 안방에서 쉬고 있던 중 00:00경 ○○군 ○○면 ○○리 000-00번지에서 지반이 붕괴되면서 000여톤의 토사가 주택 좌측을 덮쳐 질식사 한 것
 - ※ 주택부지와 전(田)의 높이차(5m)

○ 사고원인

- 사고지점은 주변보다 약간 낮은 구릉지역으로 강우 시에는 우수 등이 모여 드는 형국을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대나무밭을 차밭으로 조성, 전(田)으로 관리하는 토지임
- 00. 00일 00:00 사고발생 전(00:00)까지 ○○면에 내린 선행강우는 194mm이며 이중 **12시부터 14시까지** 내린 비가 139mm로써 시간당 평균 강우량이 46mm이고, 특히 13:00~14:00 내린 강우량은 시간당 60mm 강우로 인하여 차밭의 지반이 포화상태에서 지속강우 등의 영향으로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② 사고당시 기상상황

○ 기상특보

호우(태풍)주의보 발표*	호우(태풍)경보	해 제*
0.00일 00:00	0.00일 00:00	0.00일 00:00

* 증빙자료 : 첨부3 호우특보 발표, 첨부4 호우특보 해제

○ 강우량*

구분	04:00 05:00	05:00 06:00	06:00 07:00	07:00 08:00	08:00 09:00	0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누적 (mm)	162.5	18	193	500	100	5	0	0	0.5	0.5	0.5	150.5
시간별 (mm)	14.5	6	17	13.5	2.5	0	0	0	0	0	0	19.5

* 증빙자료 : 첨부5 강우현황

③ 사고현장의 특징

○ 지형적 특성

- 주변보다 약간 낮은 구릉지역으로 주변의 빗물 등이 모여드는 지형
- 00년전 대나무밭을 '00.00월 차밭으로 지목 변경하여 조성된 토지임

④ ○○군(시)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 인명피해(자연재해) 위험지역 지정(미지정) 지역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미지정) 지역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어 지정(미지정) 지역
-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 구분도에 의한 1·2등급 지정(미지정) 지역

○ 인명피해 최소화 관련 상황관리사항

- 00.00 00:00 : 호우주의보 발표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지시
- 00.00 00:00 : 인명 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지시
- 00.00 00:00 :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지시
- 00.00 00:00 :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특별점검 지시(실과 소장 담당읍면 출장지시)
- 00.00 00:00 : 산사태 관련 SMS 문자 발송(0회 000건)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실시 여부

- 피해지역은 사전 주민대피 대상 지역이 아님

○ 기타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사항

[첨부2] 사고지점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사진 설명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산사태 사망

사진 설명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산사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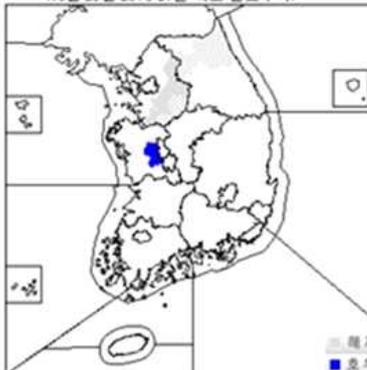
[첨부4] 호우특보 해제



호우경보 해제 · 호우경보 대처 · 호우주의보 해제(제 8-101 호)

기 상 청, 총괄예보관 신동현
2012년 8월 15일 16시 10분 발표

<08월 15일 16시 10분 특보 발표구역>



<08월 15일 16시 10분 이후 특보 발효현황>



1. 해당구역

(1) 호우경보 대처 : 광양시(광양시)

(2) 호우경보 해제 : 영기포(영기포, 모산시, 문덕시, 용인시, 용인시, 양주시, 양주시)

(3) 호우주의보 해제 : 영기포(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포(속천리산간, 노성리산간, 양양리산간, 양양리, 양양리, 인제리, 인제리, 인제리)

2. 발효시각

(1) 호우경보 대처 : 2012년 08월 15일 16시 10분

(2) 호우경보 해제 : 2012년 08월 15일 16시 10분

(3) 호우경보 해제 : 2012년 08월 15일 16시 10분

3. 내용

(1) 호우경보 대처

- 현재 예상수량(15일 12시 ~ 현재): 80-90mm
- 예상 예상수량(현재-16일 낮까지): 80-90mm, 양양 리 150mm이상
- 예상 예상수량: 90-150mm, 양양 리 200mm이상

(2) 호우경보 해제

- 호우경보 해제

(3) 호우주의보 해제

- 호우주의보 해제

4. 참고사항

- 없음

※ 위 내용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됩니다.

※ 기상특보발효정황의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또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metcky.kma.go.kr)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기상특보발효 수신하는 기관에서는 여파가 되는 발효자 연락 시에 기상청(02-2181-0502)(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특보 ⇒ 특보/정보 ⇒ 통보문 ⇒ 화면 캡처 붙이기 하면 됨

[첨부5] 피해발생 시점 강우량 현황(기상청 AWS 8.15 00:00~18:00)

MISS-DP 기상정보 : 삼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육산면제외), 광주광역시 [해비특보] (위 특보 발표시) o 없음

특보 예보 지상 해상 일기예보 위성 레이더(속력) AWS 고층 활사 유관기관 기상자료 개시

AWS :: 그래픽 | 시계열 | 집계표 | 정렬1 | 정렬2 | 구역별 | 문숫자 | AWS 도별 | 도움말 |

특보 x 레이더(속력) x AWS x 정렬1 x 특보/경보 x 통보문 x

[AWS 정렬] * 충청남도 60분강수 시작값 -500 종료값 9999 내림치순

* NOW 2012.08.15.18:00 -60m -10m -1m +1m +10m +60m 다운로드

[매분분석자료 2012.08.15.18:00 (충청도, 지점수:46)]

ID	지점명	관측소	강수15	강수60	강수6H	강수12H	일강수	감지	기온	풍향1	풍속1	풍향10	풍속10	습도	해면기압	위치
618	청양	보령	2.5	57.5	163.5	163.5	163.5	1	23.1	120.8	0.5	53.8	2.0	98.6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정자리	
612	공주	대전	18.0	47.5	86.5	88.5	89.0	0	23.5	186.6	2.0	195.9	1.1	95.1	충청남도 공주시 동진동	
497	세종시	대전	9.0	47.0	57.0	57.0	57.0	1	23.3	228.9	2.8	31.4	1.6	98.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33	정안	대전	16.5	45.5	154.0	154.0	154.5	1	23.4	84.6	0.8	92.5	1.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팔정리	
691	장산	보령	23.5	45.0	72.5	72.5	72.5	1	23.5	101.8	1.0	52.1	1.8	98.3	충청남도 청양군 장산면 한암리	
611	연기	천안	11.0	43.0	108.0	108.0	108.5	0	23.2	82.4	0.6	6.7	0.4	99.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봉암리	
632	유구	대전	9.0	42.0	173.0	173.0	174.0	0	23.6	158.2	1.5	226.7	1.0	1005.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35	보령	보령	3.0	34.5	52.0	52.0	52.0	1	23.5	302.5	0.6	369.9	0.3	94.9	1005.5	충청남도 보령시 요양동
496	금남	대전	1.5	30.5	34.0	34.0	34.0	1	23.6	86.0	1.6	111.3	1.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성덕리	
609	삼시도	서산	6.5	20.0	217.5	218.0	218.0	1	23.3	304.1	3.0	308.5	3.0	1005.4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669	외연도	서산	7.0	19.0	91.0	92.5	93.0	1	24.4	21.5	1.8	30.1	2.3	1005.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657	대천항	보령	4.0	18.5	52.0	52.0	52.0	1	23.4	0.6	2.9	358.2	2.9	1005.5	충청남도 보령시 산곡동	
646	신합	군산	0	17.0	17.5	17.5	17.5	1	24.9	258.3	6.4	250.9	6.2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629	견의	천안	2.5	11.0	92.5	92.5	93.5	1	23.4	168.4	1.0	133.4	1.4		세종특별자치시 견의면 읍내리	
645	서부	보령	2.5	9.5	94.5	95.0	96.0	1	23.6	18.9	0.8	358.8	0.7	1005.4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610	홍성	보령	1.0	8.0	100.5	100.5	102.0	1	23.4	304.7	2.3	277.4	2.2	99.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36	부여	부여	5.0	6.0	7.0	7.0	7.0	0	25.7	227.1	2.0	208.3	3.4	82.5	1004.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옥탑리
12	안면산터	서산	0	5.0	82.5	83.5	84.5	1	22.3	352.6	3.0	348.5	3.2	99.0	1005.9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송연리
232	천안	천안	0	3.0	55.0	55.0	57.0	1	23.8	0.0	0.0	99.7	0.3	92.3	1004.6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628	예산	천안	0.5	2.0	49.5	49.5	53.5	1	23.5	185.4	0.6	213.5	1.2	93.8	1005.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송정리
648	장동	대전	2.0	2.0	2.0	2.0	2.0	1	23.6	67.7	2.5	78.4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694	원호봉	서산	0	1.0	63.0	65.0	70.0	1	20.5	265.6	3.2	274.0	3.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치리	
229	구룡	서산	0	0.5	15.5	74.0	76.0	0	23.6	12.0	3.5	348.6	5.0	99.9	1005.6	충청남도 태안군 구룡면 가의도리
616	당진	서산	0	0.5	71.5	72.5	80.5	0	22.9	329.1	1.6	330.2	1.4	99.9		충청남도 당진시 채은동
617	상기	천안	0	0.5	39.0	39.0	42.5	0	23.9	227.2	1.5	237.3	1.5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합리
659	계룡산	대전	0.5	0.5	0.5	0.5	0.5	1	21.7	271.0	9.5	275.1	8.4			충청남도 계룡시 남산면 부남리
133	대전	대전	0.1	0.1	0.1	0.1	0.1	0	26.2	11.3	1.7	330.9	1.5	86.6	10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동
129	서산	서산	0	0.1	61.4	63.0	70.5	1	23.5	303.9	2.4	311.4	2.2	99.9	1006.1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636	계룡	대전	0	0	0	0	0	0	27.4	185.4	3.1	190.2	2.9	72.8		충청남도 계룡시 남산면 부남리
637	미원	서산	0	0	56.0	72.5	82.5	0	23.0	19.5	0.4	6.4	0.6		1006.2	충청남도 태안군 미원면 포지리
642	문화	대전	0	0	0	0	0	0	29.0	215.8	3.1	211.8	2.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643	세천	대전	0	0	0	0	0	0	26.8	24.3	3.8	9.0	2.0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644	양촌	부여	0	0	0.5	0.5	0.5	0	28.6	208.0	1.6	205.8	2.6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안천리
606	대산	서산	0	0	49.5	76.0	92.0	0	22.6	298.4	1.5	301.0	1.3	1005.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907	근동	서산	0	0	72.0	76.0	78.5	0	23.6	4.8	2.0	5.1	1.8	1005.7	충청남도 태안군 근동면 신진도리	
627	태안	서산	0	0	80.5	84.0	92.5	0	23.3	330.9	1.1	323.1	1.7	97.2	1006.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08	봉산	천안	0	0	67.5	68.5	73.5	0	23.8	21.1	0.5	356.1	0.6	99.9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658	안면포	서산	0	0	70.0	80.0	85.0	0	22.7	6.7	2.0	360.0	1.7		1006.0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오항리
614	서천	군산	0	0	0	0	0	0	27.5	268.9	7.2	259.3	6.9	82.2	1005.6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개동리
666	양도	서산	0	0	24.0	56.5	75.0	0	22.8	341.7	2.2	333.3	2.4	1005.5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광갈리	
667	홍도	서산	0	0	79.0	83.0	85.0	0	23.1	349.4	3.7	355.8	3.8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615	논산	부여	0	0	0	0	0	0	27.4	190.5	6.0	195.5	5.6	82.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AWS ⇒ 정렬1

⇒ 화면 캡처 붙이기 하면 됨

4 재해대장 작성요령

-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10.6월 개정)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최종 보고후 즉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로 **전산재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사유시설 등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종이 대장을 작성할 수 있음
 - ※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 항만시설은 지방해양항만청, 군사시설은 해당부대에서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 사유시설은 기록관리를 위해 대장 1부씩 작성하여 지방합동조사단 조사 후 시·군·구 자체보관하고, 시·도에는 시장·군수의 피해확인 조서 제출로 같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출 필요 없음)
- (재해대장) ① 총괄현황 작성요령
 -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원경을 촬영, 총괄현황에 첨부
 - 피해규모가 가장 큰 구간을 주 피해지역으로 선정 “주 피해단면도 작성”
 - 시설명, 시설구분(등급), 강우(강설)량, 피해위치, 피해일시, 피해원인 기록
 - 피해당시 응급조치현황, 피해액, 복구비, 복구유형(기능복원, 개선복구), 복구효과, 과거피해현황을 기록
- (재해대장) ② 피해·복구내역 작성요령
 - 피해 및 복구 단면도와 산출근거는 각각 해당란에 작성하되, 공종이 많을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 (재해대장) ③ 사진대지 작성요령
 - 공종이 많을 경우 피해 및 복구 단면도의 순번에 따라 세부적으로 피해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근경을 촬영하여 첨부(사진만으로 피해 유무, 물량, 피해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 ※ 피해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전산재해대장 등 모든 제출용 사진으로 활용하고 CD로 보관

- 피해 및 복구비 산출시 유의사항
 - 시설별 피해 및 복구단면도에 의거 정확한 단위물량을 산출하고, 공종별로 『2012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여야 함.
 - 예) 옹벽 : 물량(m)×단가=금액
 토공 : 피해단면적×연장(m)×단가=금액
 - 단가적용시에는 시설별 단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시설 단가적용시에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재해대장은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재해대장 작성대상
 - 사유시설 : 주택, 농경지 유실·매몰, 농림시설, 축사, 잠실, 가축, 선박, 어망, 어구, 수산증·양식시설 및 생물, 농림 및 수산부대시설 포함
 - 공공시설 : 전체
 - 특히, 사유시설중 유실·매몰로 확인이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서를 첨부(대장작성 안하여도 됨)
- 개선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은 별도 보고서 작성제출(B4규격)

2012. .

○○지구 종합복구계획서

○○○○(시·도)
(시·군·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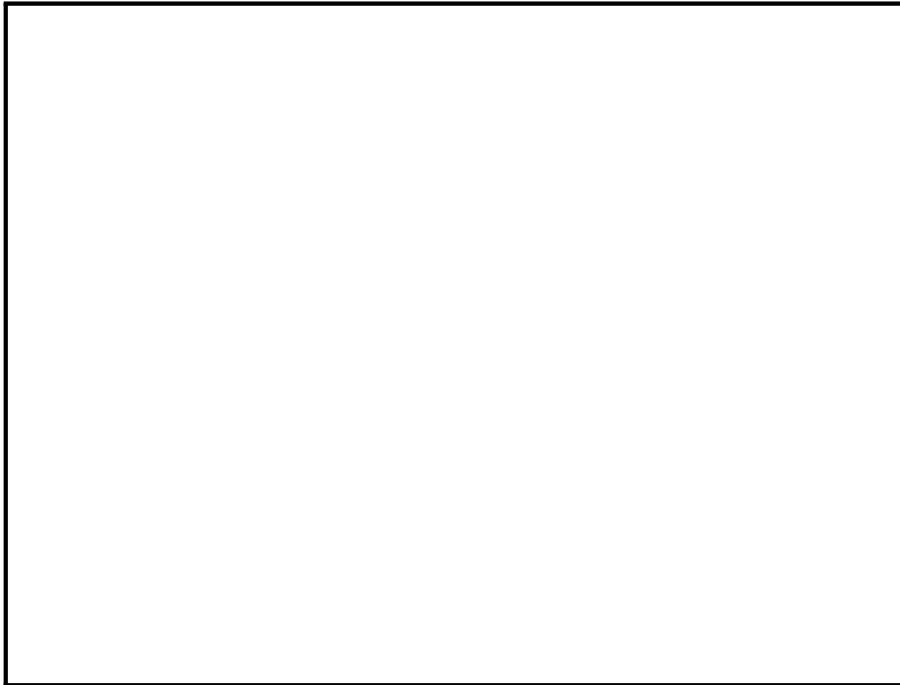
작성자	직·성명
-----	------

용지 규격 : 257mm×364mm[일반용지120g/m2(재활용품)], B4 종으로 작성

○○지구 종합복구계획서

위치도

축척표시 1/50,000, 1/25,000 등



피해원인

-
-
-

※ 호우기간 :

강우량 : 00mm(최대시우량 00mm)

피해현황

○ 시설현황

- 지구명 :

- 위치 :

○ 피해현황(피해액 00,000백만원)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등급	피해물량	피해금액	비고
계					

※ 과거 피해현황

발생일시	피해개요	피해규모	피해원인	복구내용	비고

종합복구 필요성

○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위험성, 시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

○ ………

○ ………

※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피해 발생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종합복구계획

○ 복구방침 :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등급	복구물량	복구금액	비고
계					

피해 및 복구단면도

산출근거

○ 총 소요액	00,000 백만원
○ 공사비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 보상비	00,000 백만원
○ 설계비	00,000 백만원
○ 감리비	00,000 백만원

《공법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 재년관련 전문가 등의 대상으로 종합복구계획수립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결과 첨부

기대효과

○

○

피해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 제출서류 : 재해대장, 편입토지조서, 편입토지지적도, 신규단가 관련서류 등

2013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997.	6.	25.	초	관	발행
1998.	6.	5.	제	2관	발행
1999.	7.	26.	제	3관	발행
2000.	7.	11.	제	4관	발행
2001.	7.	9.	제	5관	발행
2002.	6.	10.	제	6관	발행
2003.	7.	30.	제	7관	발행
2004.	8.	17.	제	8관	발행
2005.	6.	30.	제	9관	발행
2006.	6.	20.	제	10관	발행
2007.	7.	4.	제	11관	발행
2007.	9.	20.	제	12관	발행
2008.	6.	18.	제	13관	발행
2009.	7.	14.	제	14관	발행
2010.	7.	5.	제	15관	발행
2011.	7.	5.	제	16관	발행
2012.	7.	10.	제	17관	발행
2013.	8.	5.	제	18관	발행

편 집 :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발 행 처 : 소 방 방 재 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4호

인 쇄 처 : 새롭출판 (02)2272-3662

<비매품>